

2019
MARC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2회 KAIA EDU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9년 제2회 KAIA EDU 교육안내



교육 개요

- 추진배경 : 국토교통 R&D의 효율적 과제관리 도모와 연구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공식 교육프로그램 운영(2019년 신설)
- 교육일시 : '19년 03월 27일, 9시30분 ~ 17시00분
- 교육대상 : 국토교통 R&D 연구책임자, 실무담당자 등
- 교육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대회의실(경기 안양)
- 교육내용 : **연구비 관리 및 사용, 기술사업화 등**
- 상담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2회의실(사전신청-전화)
- 상담내용 : 기술실시계약, 기술사업화 컨설팅, 신기술 등

* KAIA EDU교육은 2019년 신설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 KAIA ACADEMY 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문의 및 상담신청 : 031-389-6496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일정(안)>

구분	과목	세부 내용
9:30~10:00 (30분)	교육 등록 및 안내	- 수강생 등록 및 교육 안내
10:00~11:30 (90분)	연구비 관리 및 사용 (19년 개정)	- 올바른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 정산 - 연구비 부정사례 안내 - Q&A
점심 - 90분		
13:00~14:30 (90분)	新연구비 관리시스템 교육 (19년 개정)	- 新연구관리시스템 기본 사용법 - 新연구관리시스템 변경 내용 교육 - Q&A
휴식 - 10분		
14:40~15:00 (20분)	기술료	-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제도 - 기술료 감면 및 사용 - Q&A
휴식 - 10분		
15:10~15:30 (20분)	기술사업화	- 기술사업화 컨설팅평가 안내
휴식 - 10분		
15:40~16:00 (20분)	신기술	- 건설 신기술제도 소개 - 최근 제도개선 내용 등
Q&A(교육일정 안내 등)		

- * 세부일정은 교육 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교육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대회의실(아카데미홀)

<상담 일정(안)>

구분	과목	세부 내용
15:00~15:40 (40분)	기술료 상담	- 기술료 및 기술실시계약 등 상담 (9층2회의실 에서 개별 진행)
15:40~16:20 (40분)	기술사업화 상담	-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상담 (9층2회의실 에서 개별 진행)
16:20~17:00 (40분)	신기술 상담	- 건설 신기술 등 상담 (9층2회의실 에서 개별 진행)

- * 세부일정은 교육 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상담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2회의실
- *** 상담 신청 : 사전신청 ~ 전화(선착순)

<KAIA EDU 교육 만족도 조사>

오시는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9층 (지하철 4호선 평촌역 2번출구)



- 주차장(주차타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43 평촌훼미리타운



* 진흥원 주차시 주차비 지급 불가

** 평촌훼미리타운 주차타워 주차시에만 주차비 지급 가능



목차

01	국토교통 R&D 연구비 관리 및 사용	1
02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21
03	성과활용 및 관리(기술료)	57
04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컨설팅평가 안내('20년 계속과제)	85
05	KAIA 기술인증관련 제도 소개	99

01

국토교통 R&D 연구비 관리 및 사용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 R&D 연구비 관리 및 사용

2019. 3. 2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지원실



목차

1. 연구비 관리 체계
2. 연구비 계상
3. 연구비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4. 연구비 지급 및 전산관리
5. 연구비 관리 및 사용
6. 연구비 정산



I. 연구비 관리체계

연구비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 2018.4.17 시행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연구비관리규정) : 2018.9.13 개정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018.12.19 개정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 2018.12.24 개정

단계별 연구비 관리 체계

주요 업무

- | | | |
|---|-----------------------|--|
| 1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라 연구비 집행계획 수립 |
| 2 | 협약 및 연구비 수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관리 전용계좌 개설, 연구비 카드 발급 • 하위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및 구입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 지정 |
| 3 | 연구수행 및 협약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사용실적 및 증빙자료 관리 철저 •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비 관리 |
| 4 | 연구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 5 | 정산 및 국토부 보고·반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및 이자 반납 • 증빙은 과제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 |

3

II. 연구비 계상

과제체계 및 구성

[일반과제] 단위/요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

[연구단과제] 단위/요소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패키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사업단과제] 기술별 총괄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 적용을 포함하는 과제



4

II. 연구비 계상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 부담비율 (2018.9.13)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에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 이상 (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 이상 (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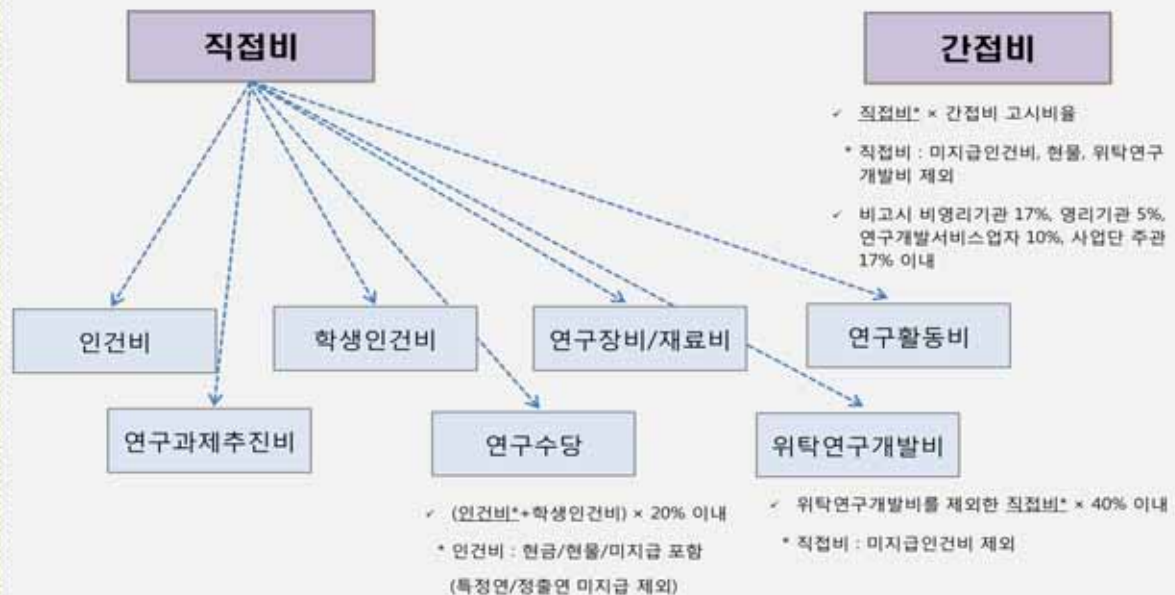
< 비교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15.12.22 개정)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II. 연구비 계상

연구비 비목 구성



6

II. 연구비 계상

세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간접비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①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계상
(참여율100%기준 월 계상 하한)
- 학사과정 1,000,000원/월
- 석사과정 1,800,000원/월
- 박사과정 2,500,000원/월
-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 기준

② 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인건비

- 연봉총액×참여율*
- * 참여율
- 불가피한 경우, 1인당 최대 130%까지 참여율 계상 가능
-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 기준 인건비 100% 범위에서 지급

③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원 인건비

- 현물/미지급 계상, 현금 지급 불가
- * 미지급 인건비는 연동비용 계산을 위해 30% 이내 계상
- ✓ 현금계상 가능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신고된 기업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참여율 100%)
- 그 밖에 장관이 현금 계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7

II. 연구비 계상

세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간접비

- ✓ 기기/장비, 시약/재료,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 실소요 집행금액 기준으로 계상
- ✓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장비구축계획서 제출(별도 심의)
- ✓ 참여기업에서 부담한 재료 및 연구기자재 등 현물 계상
- *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장부가액/사용률 계상

- ✓ 연구활동비 : 국외출장비, 인쇄/복사비, 전문가 활용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시험/분석비,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서 일괄 계상
- ✓ 매출부가세(위탁기관만 계상 가능)
- ✓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식대/다과), 야간식대 등
- ✓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 책임자, 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
- ✓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학생인건비) × 20%범위
- ✓ 인력양성/연구장비구축 목적 과제(세부기준) 10% 범위
- ✓ 일부 연구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
- ✓ 주관/협동연구기관만 계상
- ✓ 현물 계상 불가
- ✓ 과제 일부분을 용역비로 집행 불가

-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성과급
- ✓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 ✓ 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용
- * 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 ✓ 비고시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5%,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사업단 주관 17% 이내

8

III. 연구비 계좌개설 및 카드 발급('18.7.30 협약과제부터)

연구비 계좌/카드

연구비 계좌개설

일반 유형

- ✓ 별도의 연구비 관리계좌 개설
- ✓ 계좌정보는 우리원 R&D사업관리시스템 등록 ([http:// r&d.kaia.re.kr](http://r&d.kaia.re.kr))

중소·중견 유형

- ✓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일반 입출금 계좌** 개설 (특약계좌 아님)
- ✓ 연구비 관리계좌는 **카드결제계좌로 사용 불가**
- ✓ 계좌정보는 우리원 R&D사업관리시스템 등록 (<http:// r&d.kaia.re.kr>)

연구비 카드발급

- ✓ 중소기업 여부 관계없이 **모든 기관은 신한연구비 카드 발급** 받아 사용
- ✓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다년도카드재사용" 신청하여 사용**
- ✓ 발급매수 : 수행기관별 5매까지 발급 가능
- ✓ 신청방법
- 최초 연구비카드 신청 법인은 1회에 한하여 연구비카드발급 신청서(시스템 출력)와 구비서류 우편 제출(주후 공인인증방식으로 온라인 발급신청)
- ✓ (우편주소) [04551]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 2가)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기관영업팀
※ 문의 1566-0369

9

IV. 연구비 지급 및 전산관리('18.7.30 협약과제부터)

연구비 배분

기 존

변 경

민간부담금 납부 방식

- ✓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계좌로 입금한 후 정부출연금과 함께 연구비로 지급받을

- ✓ 참여기업은 해당 과제별 민간부담금을 **전문기관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
- ✓ 기관별 민간부담금 납입계좌는 연구비관리시스템(<http://kaia.rndcard.com>) 연구비 배분에서 확인 가능

기관별 연구비 배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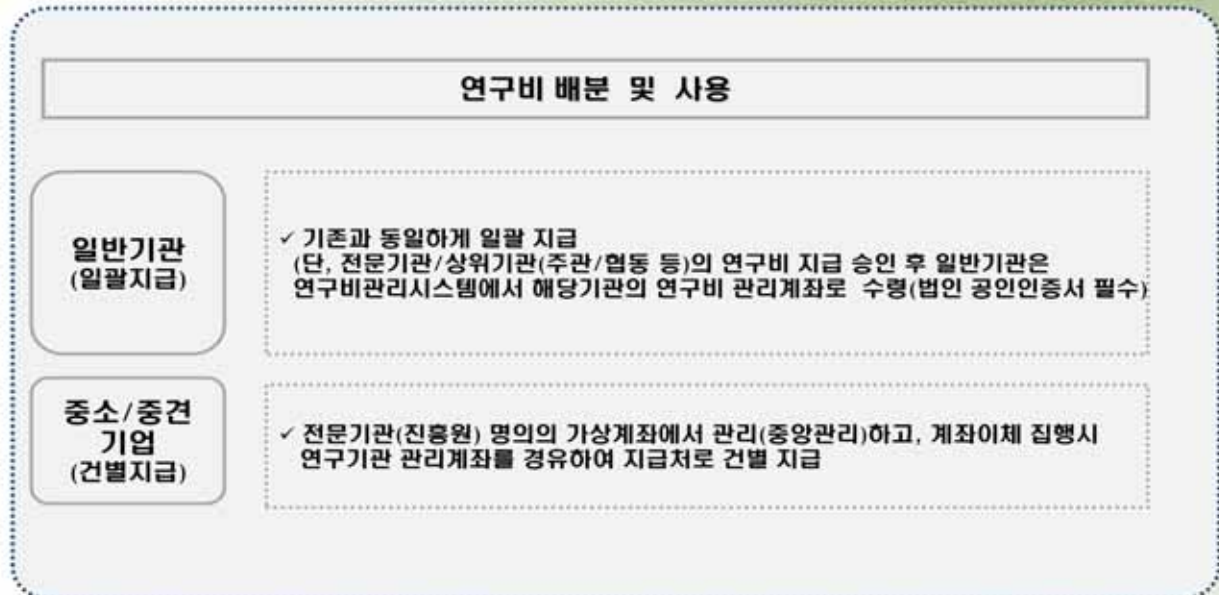
- ✓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주관연구기관이 다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에게 연구비를 배분

- ✓ **전문기관이 기관별로 직접 연구비 지급**
(단,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책임자의 ID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하위기관(위탁 제외) 연구비 배분 후 하위기관이 연구비 시스템에서 수령)
*중소/중견은 건별 지급 사용
- ✓ 민간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기관은 연구비 배분 불가능

10

IV. 연구비 지급 및 전산관리('18.7.30 협약과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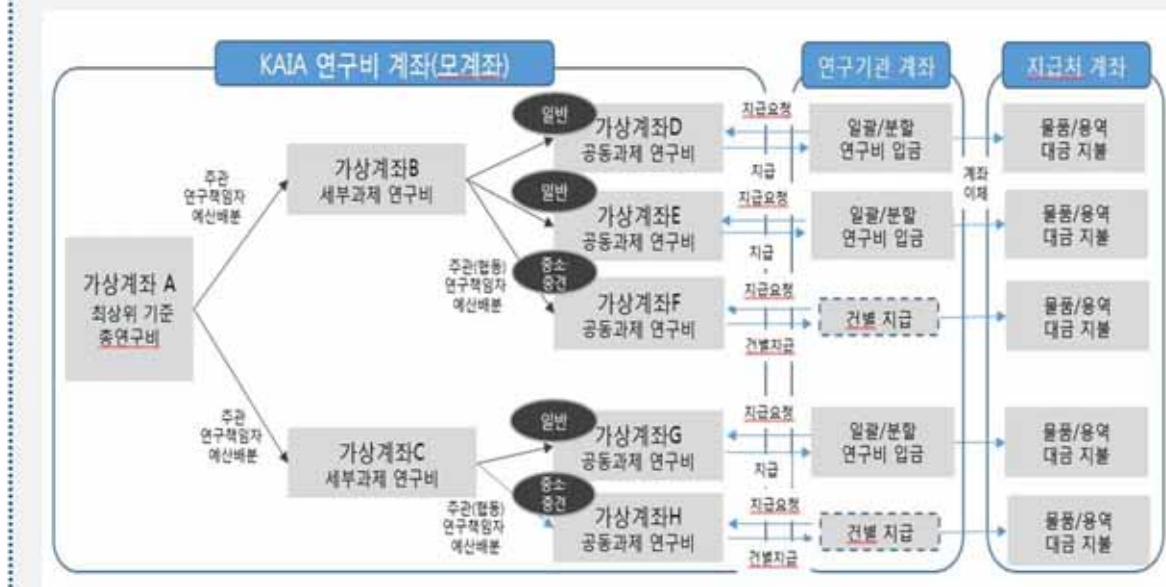
연구비 배분 및 사용(변경)



11

IV. 연구비 지급 및 전산관리('18.7.30 협약과제부터)

연구비 배분



12

IV. 연구비 지급 및 전산관리

연구비 전산관리

연구비 관리시스템 (<http://kaia.rndcard.com>)

일 반

중소 · 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

- 수행기관 계좌이체 선 사용후 집행내역 등록
- 사용후 30일 이내
- 연구비 카드 사용후 집행내역 시스템 등록
- 사용후 30일 이내

중소 · 중견 기업

중소 · 중견기업 대상

- 연구비 집행시 건별 집행 요청, 건별 승인(자동) 후 실시간 거래처로 계좌이체
- 연구비 카드 사용후 집행내역 시스템 등록
- 사용후 30일 이내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 · 투명성 제고

- 연구비 집행 투명성/신뢰성 지속 확보
- 전자정산(Paperless)을 위한 기반 마련
- 정산, 영수증 보관 등의 행정업무 간소화

13

V. 연구비 관리/사용

연구비 관리 권한과 책임



연구기관장

- 연구비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 합리적 집행기준 마련



회계감사 부서장

- 연구기간 중 연구비 일상감사
- 연구종료 후 연구비 회계감사



연구비관리자

- 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 내역 기록/관리
- 증빙서류 종료 후 5년간 보존



연구책임자

- 연구비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
- 직접비 집행(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제외) 발의
- 참여연구원 평가 및 연구수당 배부 결정

14

V. 연구비 관리/사용

기본원칙

연구비 관리

연구비만 관리 사용하는 별도의 연구비 관리계좌 신설

사용방법

-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
-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는 법인카드 사용 가능

사용기간 및 목적

- 연구기간 내에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곳에만 사용

사용내역 입력

- 사용후 30일 이내 연구비관리시스템* 입력
- <http://kaia.rndcard.com>

기타

- 모든 기관은 기자재 등 물품 구매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의무 (국세청 연동 등록)
- 중소/중견기업은 계좌이체시 공급가액만 이체 가능
-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는 사용금액에서 제외 (연구비로 기 집행한 경우, 연구기간 내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사용)

15

V. 연구비 관리/사용

연구비 불인정 기준

1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예외 (연구기기, 장비구입비 제외)
- 위탁정산수수료, 연구수당,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예외

2

- 연구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

3

- 사용내역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미입력되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연구비

4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5

- 전문기관 장 승인사항 중 미리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금액
- 규정된 범위 초과사용 금액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6

- 직접비(인건비,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제외)를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비참여자에게 지급한 금액

7

- 기업의 경우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한 경우(기 지급한 인건비 포함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및 현금부담금 감면액(중소/중견) 전액 불인정

16

V. 연구비 관리/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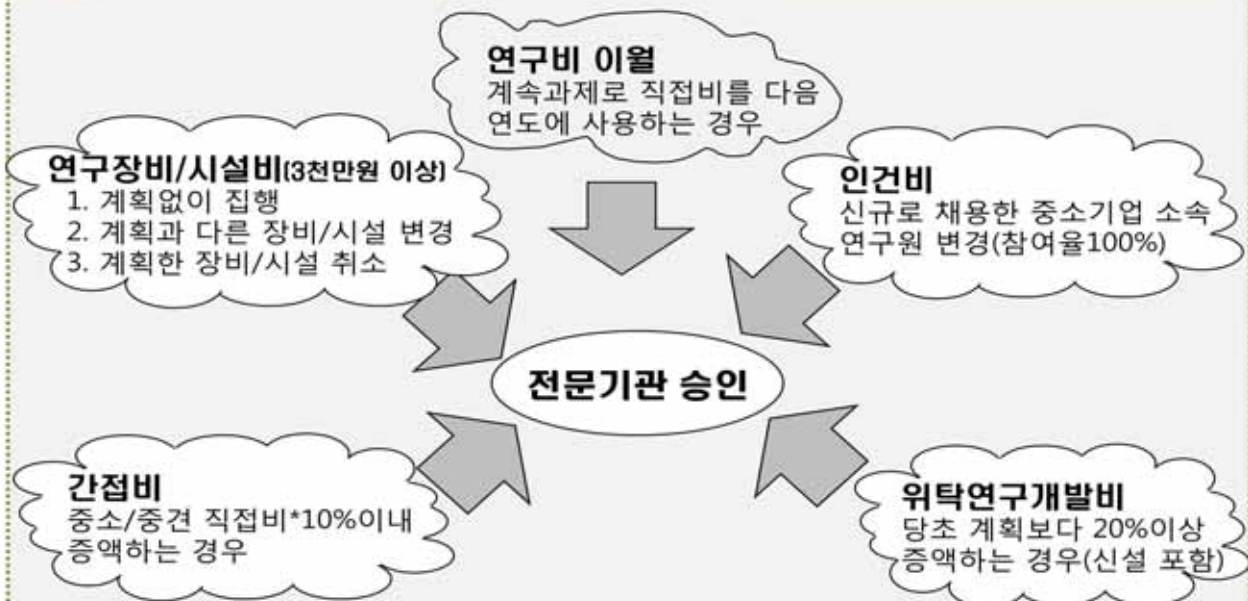
비(세)목변경 제한기준

비 목	세 목	증액 가능 여부	주요 사항
직접비	인건비	○	- 해당 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 ⇨ 전문기관장 승인 -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청년인력을 의무 고용(1년 이상) 유지기간 이전 해고할 경우 인건비 전액 불인정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장비·시설 · 계획없이 집행,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 계획한 연구장비·시설 취소 ⇨ 전문기관장 승인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 추진비	○	-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상한 품목만 집행 가능 (정산매뉴얼에 인정 항목 명시)
	연구수당	×	
	위탁연구 개발비	○	- 20% 이상 증액(신설)시 ⇨ 전문기관장 승인
간접비		△	- 중소·중견기업은 전문기관장 승인 후 직접비·10%(계상 5% 포함) 이내 증액 가능

17

V. 연구비 관리/사용

협약변경 사항(전문기관 승인)



✓ 해당 연차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장에게 협약변경 신청(연구비 이월은 연차종료 1개월 전 신청)

18

V. 연구비 관리/사용

세목별 사용 유의점



19

V. 연구비 관리/사용

세목별 사용 유의점



20

V. 연구비 관리/사용

주요개정사항 (인건비)

	기 존	변 경	적용시점
인건비	-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	2018.9.13이후 협약과제 부터 2018.9.13이후 협약과제 부터
학생인건비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 변경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전문기관장 승인 [미승인시 불인정]	- 삭제	2018.9.13이후 협약과제 부터

21

V. 연구비 관리/사용

주요개정사항 (직접비)

	기 존	변 경	적용시점
연구장비/ 기자재	-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집행하거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시 전문기관 장 승인	〈전문기관장 승인사항〉 -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집행할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여 구매하는 경우 - 원래 계획한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8.9.13이후 협약과제 부터
국외여비	- 연구개발계획서보다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 삭제	2018.11.28 부터

22

V. 연구비 관리/사용

주요개정사항 (직접비)

	기 존	변 경	적용시점
연구과제추진비	-	- 직접비의 10% 이내 집행시 정산 면제	2018.12.19 이후 협약과제 부터
민간부담	-	- 중소/중견인 경우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추가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2018.9.13 이후 협약과제
연구비 사용 불인정 기준	-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 발의 필수	- 인건비, 간접비, 연구기관 단위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 발의 불필요	2017.5.8 부터

23

V. 연구비 관리/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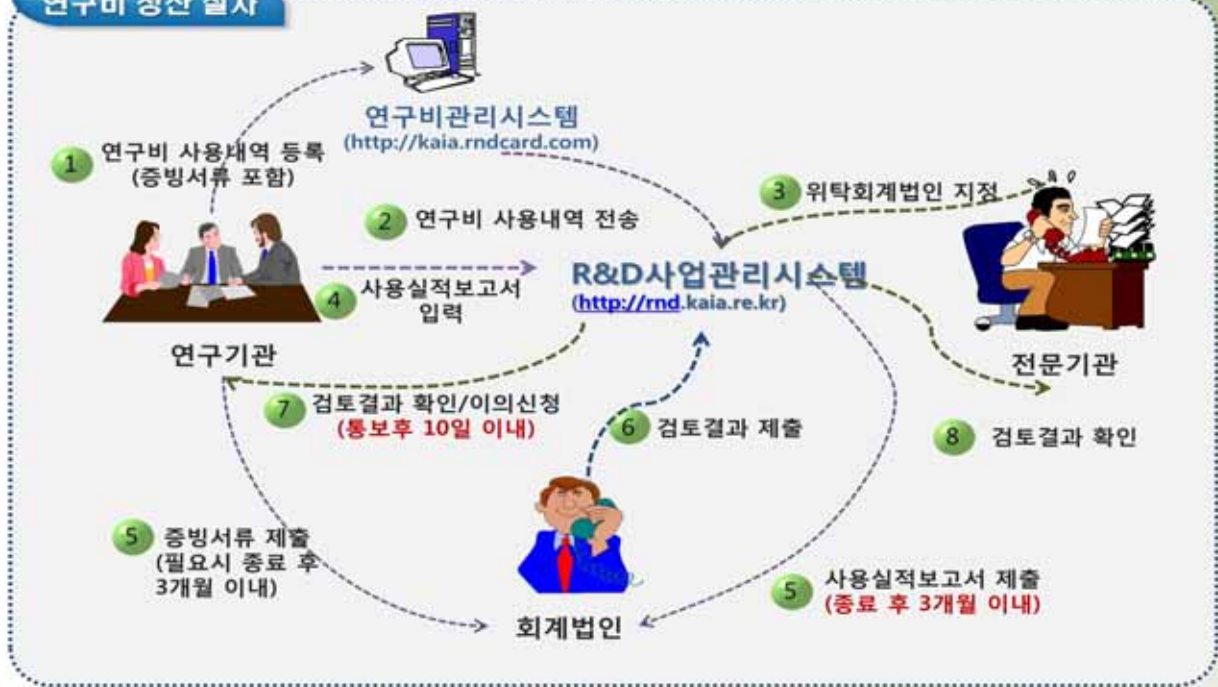
주요개정사항 (간접비)

	기 존	변 경	적용시점
간접비	- 영리기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제외) ·5% 이내	- 전문기관장 승인시 중소/중견 기업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10% 이내	2018.9.13 부터

24

VI. 연구비 정산

연구비 정산 절차



25

VI. 연구비 정산

발생이자 사용 방법

-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발생이자 등록 후 발생이자 사용 등록
- ✓ R&D사업관리시스템 전자정산-사용실적보고서작성-연구비계획실적에 발생이자 사용 저장
- ✓ 발생이자 사용에 자동 반영됨

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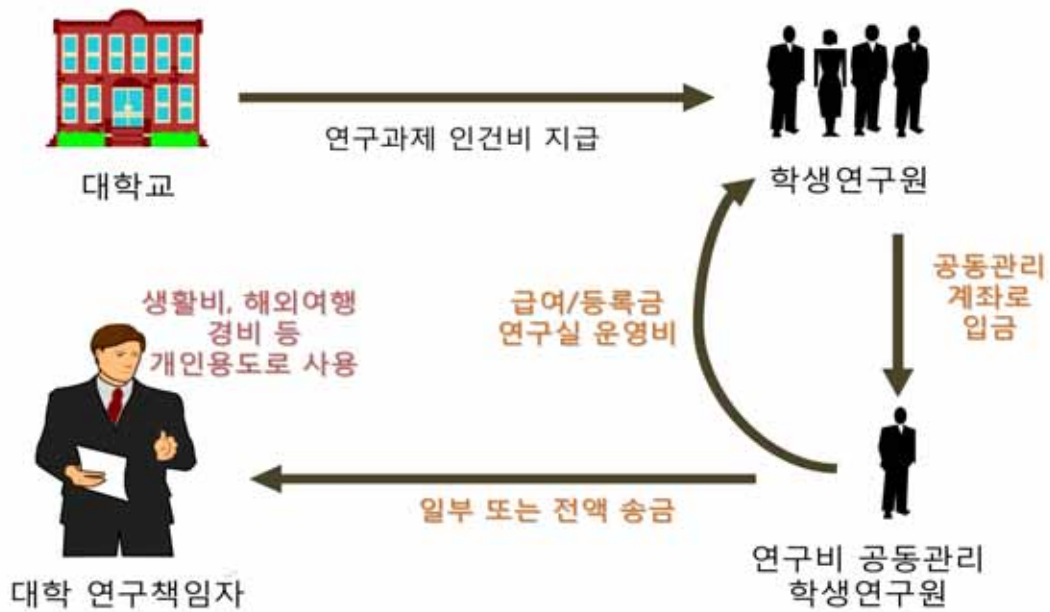
- ✓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최종 정산 검토결과 통보 및 정산회수금 입금 요청
- ✓ 정산회수금 입금 요청 통보 후 연구기관은 **30일 이내**에 **가상계좌로 정산회수금 입금**
- ✓ 단위과제 기관별 **가상계좌로** 입금
- ✓ 정산회수금은 일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처리
 - [중소/중견기업은 연구비시스템 연구비 반납에서 처리]
- ✓ 가상계좌로 정산회수금 입금 관련 공문 처리 불필요

26

26

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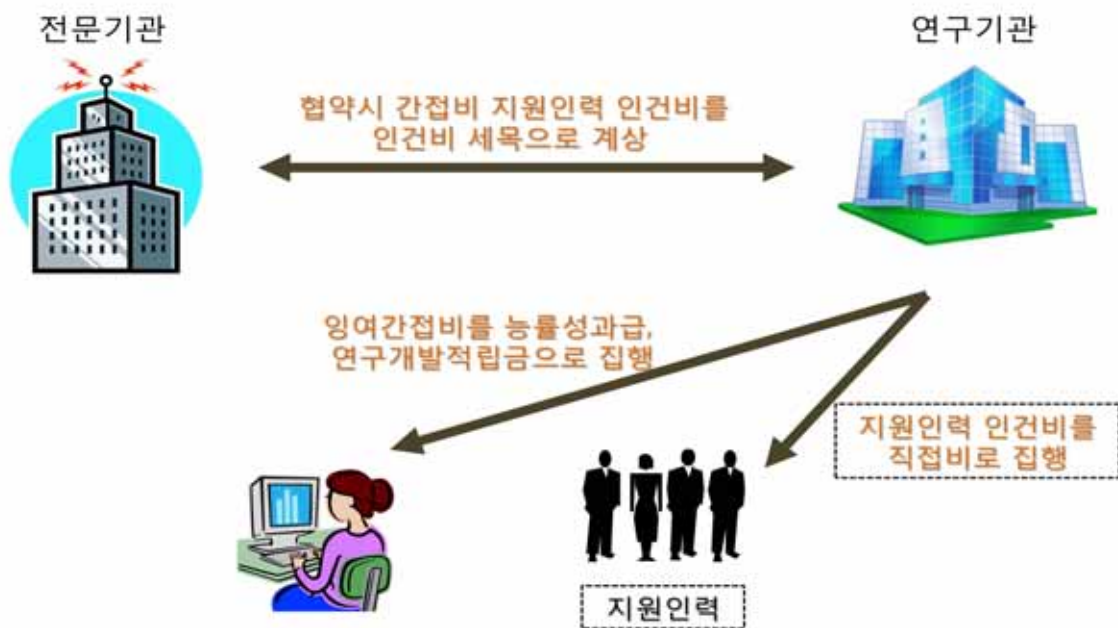
〈사례1〉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27

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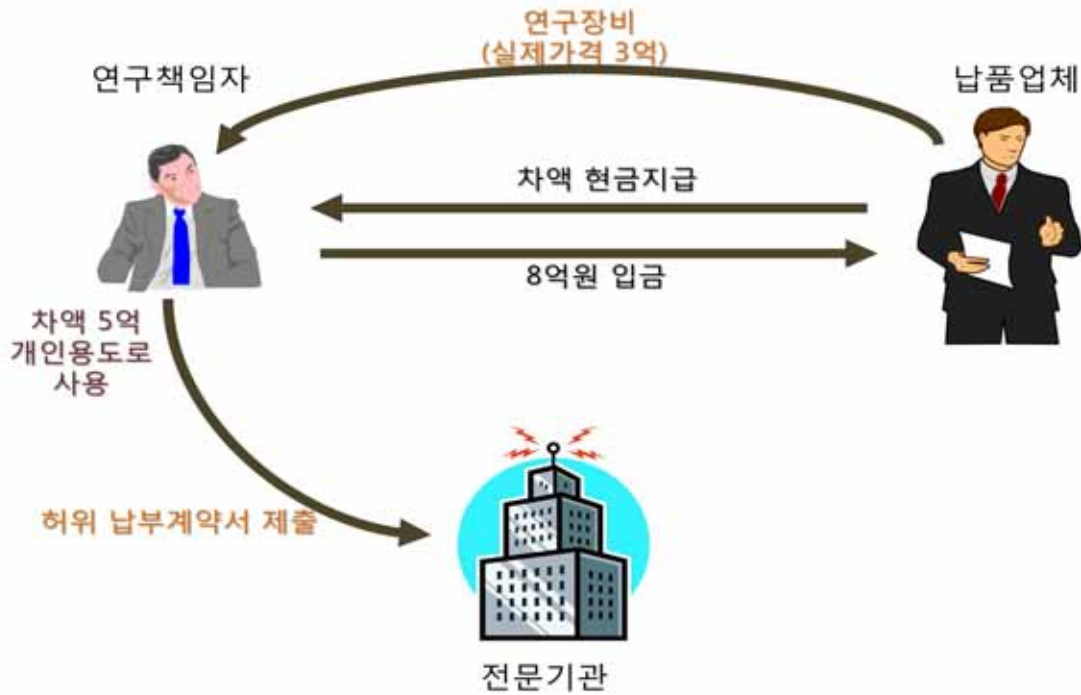
〈사례2〉 간접비 지원 및 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로 계상 및 집행



28

〈사례3〉 연구장비 허위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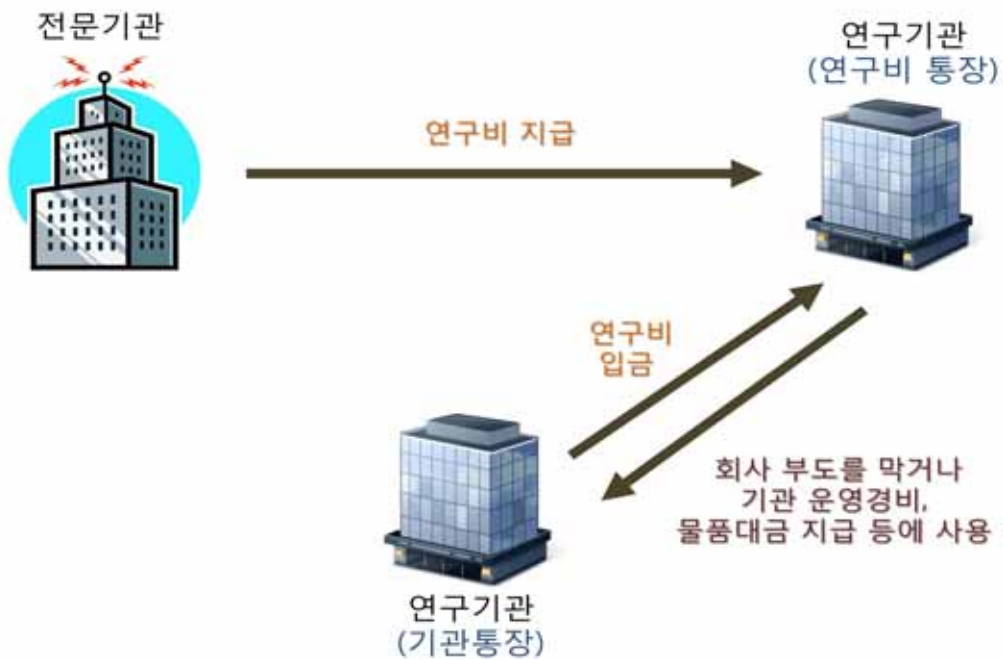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29

〈사례4〉 연구비 기관운영비로 사용후 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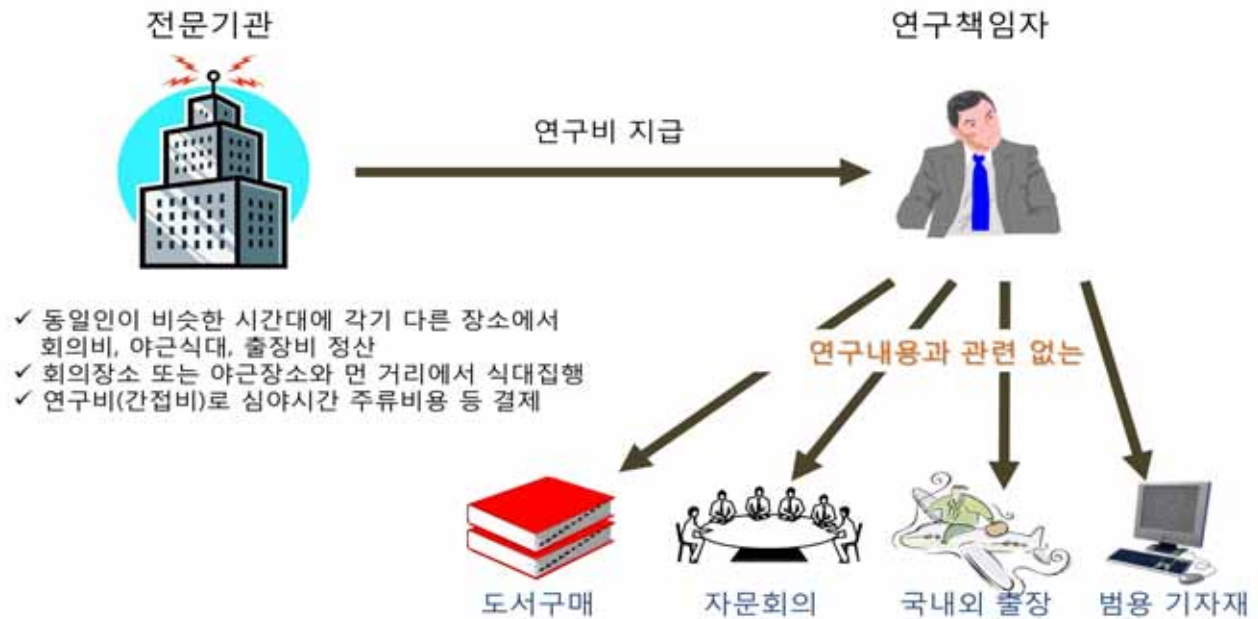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30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사례5〉 연구목적 외 연구비 사용



31

학술지 및 학술대회 참가 시 유의사항

- ◆ MBC('18.7.19)에서 가짜 논문실적을 제공하는 사이비 학술단체(WASET, OMICS)에 정부 R&D 연구진이 대거 참여 중임을 보도
 - 등록비만 내면 가짜논문도 단시간에 채택,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발표
 - 다양한 학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모든 전공 참가 가능
- ◆ **부실학회 참가 관련 연구비 불인정**
 - 학회 구성 내용이 해당 과제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 해당 전문가와의 연구내용 공유 및 자문, 관련분야 동향 및 자료 수집 등의 학회 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 ◆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또는 학술대회)인지 사전 검토 필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 참조)
 - 해당분야 전문가의 발표 이력 및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IF) 등 전반적으로 검토

32

<참 고>

청년 고용 3종 패키지

청년 고용

- ✓(청년기준)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시행기간) 한시적 적용(-2022년)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시행내용)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

의무고용 조건

*2022-12-31까지 공고 과제

- ✓(적용기준) 1)세부과제 기준 2)기업의 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 3)기업 또는 기업 컨소시엄
- ✓(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1명 고용(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 ✓(채용시점) 최초 참여 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률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기지급금 포함)

현금 감면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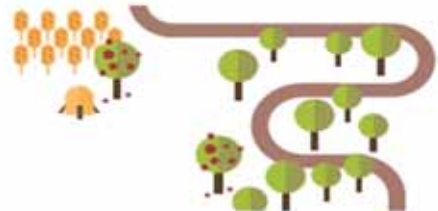
* 2022-12-31까지 협약 과제
*의무고용 비대상 기업도 적용 가능

- ✓(적용기준) 1)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2)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적용내용)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 이상 고용유지 필요)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중방 어려움 고려)
-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 회수

기술료 감면 조건

*2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 ✓(적용기준) 1)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2)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적용내용)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차 인건비의 50%만큼 감면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중방 어려움 고려)
-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액 전액 회수



Thank You

1.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

www.kala.re.kr →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 매뉴얼/가이드 → 연구비 관리 및 정산 (2019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 연구비 관리 문의 : 031-389-6362, 495

3. 연구비카드 문의 : 031-389-6478, 479

02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존)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1)

① 연구비 카드제 도입

- 연구비카드 [클린카드] 사용 등을 통한 연구비 투명성 확보 ('06)
- 클린카드 도입으로 국내외 승인제한 업종 검증

② 연구비 실시간 관리

- 연구비 사용 등록 후 지급되는 '이로미 시스템' 운영 (IBK기업)
- 기존 IBK기업은행 중심의 연구비 집행관리 체계 구현
 - 민간기업 41%, 출연연 26%, 대학 25%, 기타 8% 지원 (17년 기준)

③ 시스템 주요기능

- 연구기관 시스템 연동 통한 연구비집행 관리 [대학, 출연연]
- 문자 알람을 통한 30일 이내 집행등록 유도 [대학, 출연연 등]
- 연구비카드 사용내역 등 정산 증빙 관리는 연구기관 자체 관리

(기존)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2)

4

연구비 사후검증

- 연구비 집행 후 정산시 적정사용 검증
 - 연구비 집행 후 등록된 내역에 대해 제한적인 모니터링 가능
 - 연구비 집행 전 사전 예방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미흡

2015년 정부 R&D 혁신방안 제도사업으로
“실시간 연구비 관리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 대두
연구비 집행 전, 후 부적정 집행 사전 예방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5

신한카드

추진 배경 (1)

01

연구비카드제
협약 기간 종료 도래

협약 기간종료

연구비카드제 협약종료 도래
- IBK기업은행과의 업무
협약기간 종료 (17. 9월)

02

전문화
시스템 필요

시스템 보완

예산 증가 따른 연구비 부담
집행 및 오남용 지속 개선
(국가연구비 관련규정표준화)

03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필요

실시간 모니터링

사전 예방관리 업무 요구확산
-정부R&D혁신방안이행사항
[15. 6 관계부처 합동]

6

신한카드

추진 배경 (2)

04 신한금융그룹 선정 (공개입찰)

공개입찰 결과

2017년 8월 IBK기업은행 및 신한금융그룹
공개 입찰을 통한 전담 금융사 선정
- 과기부 이지바로시스템 유형을 제한한
신한금융그룹을 새롭게 선정 함

05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미래부 16. 8)

범부처통합연구비모니터링

**[1단계] NTIS· 과제정보 등을 연계한
범부처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하 모니터링시스템)**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2단계]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 추진(이하 통합시스템)**

7 신한카드

추진 배경 (3)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2016. 8)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단계별 시스템 구축 개념도]

1단계(모니터링시스템)

4개 부처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의
연구비 집행정보를 우선 연계 수집하는 시스템
구축 ['17년 말]
- 연계부처 순차적 확대 및 국세청, 관세청 등
행정정보 연결

2단계 (통합시스템)

범부처 연구비 통합시스템 구축
- 구축방안별 경제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8 신한카드



시스템 구축 방향



11

신한카드

시스템 구성도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구성도



12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1)

01



연구기관 유형별
모니터링 구현 (유형구분)

02



Data 중심의
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03



연구기관 시스템연동
기능 보완

04



시스템 사용자
관리 기능 및 편의 기능 강화

13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2)

01



연구기관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 구현 (1)

영리기관

3자 이체 관리를 통한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과 집행검증관리 방식

주요 대상 : 중소 · 중견기업

주요 특징 : 가상계좌 예산관리 펌핑킹
[3자거래 방식] 계좌이체
연구비시스템만을 통해
집행 가능

[당해년도 연구시작일: 18년 7월 31일 이후]



비영리기관

연구기관 MIS 시스템연동을 기반한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검증관리 방식

주요 대상 : 비영리기관 (대학, 출연연)

주요 특징 : 연구비실시간모니터링과
집행내역관리를 연구기관
MIS와 연구비시스템간
연동 통해 집행 가능



14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3)

01



연구기관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 구현 (2)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중소·중견유형)



세부상세내용

- 1-2 과제별 예산집행 품의**
- 잔여예산확인 후 진행
 - 자체 회계규정 준수여부 확인
- 3 과제별 예산집행 적합성**
- 증빙서류 및 지급처 정보확인
 - 실시간모니터링 정보입력 통한 사전 검증 후 거려져 정보입력
- 4-6 실시간모니터링 후 이체**
- 잔여예산 및 필수 정산 증빙 Data 검증 확인
 - 전문기관 연구비 3자 거래 지급 Firm-Banking 이체
- 7-8 최종 이체결과 확인**
- 실시간모니터링 결과 확인
 - 과제별, 세목별, 잔여 예산확인

15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4)

01



연구기관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 구현 (3)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일반유형)



연구비집행 절차

- ① 결의정보 사전전송**
- 연구기관 MIS/ERP와 연계하여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의 정보 사전 등록
 - 과제정보, 비세목정보, 이체대상, 이체금액 등 입력
 - 카드매출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증빙
 - 결의정보를 연동하여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의시점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
 - ※ 집행내역 Data 검증 및 일부 증빙확인
- ② 연구비 집행 / 계좌이체**
- 결의확정이 완료된 내역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집행
- ③ 실제 이체정보 전송 통한 검증**
- 최종 이체 완료된 결과 정보를 재전송 하여 사전 결의 확정된 결의 정보와 비교 후 일치하는 내역에 한하여 연구비 집행분으로 관리

16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5)

02



Data 중심의 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1)

기존 (As-Is)

증빙 중심의 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연구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연구종료 후 정산시 검토하여
불인정 처리



향후 (To-Be)

비세목별 연구비 집행 관련
Data증빙

연구비 집행전 검증으로
부당집행 사전검토 검토
[연구비 정산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기반 마련]



17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6)

02



Data 중심의 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2)

사용용도별
입력사항
예시

세목	사용용도	기본정보	집행정보	비고
인건비	내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 성명(예금주), 직급(입력사항반영) 또는 학위과정 (입력사항반영), 지급기준액(연봉총액(법정포함, 연봉/ 월봉복수기재)),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소수점 2자리 미만 절사), 참여기간(시작-종료)지급/마지급/ 현물구분 필요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결의제목, 소속,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 지급대상월,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이체 수수 료 (기본정보와 연계 관리)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 파일로 같음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 현황, 비통합기관 기준) 소속, 성명(예금주), 직급(입력사항반영) 또는 학위과정 (입력사항반영), 지급기준액(연봉총액(법정포함, 연봉/ 월봉복수기재)),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소수점 2자리 미만 절사), 참여기간(시작-종료)지급/마지급/ 현물구분 필요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결의내용(제목) < 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지급처(사용처), 이체일자, 지급액 이체수수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 파일로 같음
			결의제목, 소속,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 지급대상월,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이체 수수 료 (기본정보와 연계 관리)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 파일로 같음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국내외구분,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 파일로 같음

18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7)

02



[참고사항] 타 전문기관 관리 예시

타 전문기관
입력사항
예시

세목	사용용도	기본정보	결의정보	이체정보
인건비	내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 성명(예금주), 직급(입력사항반영) 또는 학위과정 (입력사항반영), 지급기준액(연봉총액(법정포함, 연봉/ 월봉복수기재)),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소수점 2자리 미만 절사), 참여기간(시작-종료)지급/마지급/ 현물구분 필요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참여연구원 현황) [기본정보비교대상] 소속, 성명(예금주), 직급(입력사항반영) 또는 학 위과정(입력사항반영), 지급기준액(연봉총액(법 정포함, 연봉/월봉복수기재)), 과학기술인등록번 호, 참여율(소수점 2자리 미만 절사), 참여기간 (시작-종료)지급/마지급/현물구분 필요 계좌정 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급일, 지급액,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이 체금액(실지금액보 다 같거나 작음)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 성명(예금주), 직급(입력사항반영) 또는 학위과정 (입력사항반영), 지급기준액(연봉총액(법정포함, 연봉/ 월봉복수기재)),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소수점 2자리 미만 절사), 참여기간(시작-종료)지급/마지급/ 현물구분 필요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결의내용(제목) < 통합관리기관 > 연구책임자(소속, 성명, 직급), 결의일, 결의내용, 결의금액,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비통합관리기관> [기본정보비교대상] 소속, 성 명(예금주), 직급(입력사항반영) 또는 학위과정 (입력사항반영),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소 수점 2자리 미만 절사),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 명, 예금주) [기관MIS에서 추가등록사항] 지급일, 결의일, 결의내용, 결의금액(실지금액, 법정부담금)	지급일, 지급액,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수령인 지급일, 지급액,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이 체금액(실지금액보 다 같거나 작음)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해당없음	물품구분(장비), 결의일, 결의내용, 결의금액, 검수일자, 검수자, 지급처,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NTIS 등록정보(3천만원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정보(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총구입액, 승인번호, 공급자명, 공급자 사업자 번호)	검수일자, 검수자, NTIS 등록정보(3천 만원이상), 지급일, 지급액, 계좌정보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급처

19

신한카드

연구비 지급 및 사용

① 연구비 계좌 및 카드 >

② 연구비 지급 과정 >

③ 연구비 사용 방법 >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1)

연구비 관리계좌 개설



중소·중견유형
(중소·중견기업)

▶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연구기관 명의의 일반 입출금 계좌 개설
(은행 방문 전 필요 서류 반드시 확인)
- 연구비 관리계좌는 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반드시 등록

▶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는 관리계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시중 금융기관 계좌 사용
(개설 또는 기존 계좌 사용 가능)



일반유형
(출연연, 대학, 공기업, 대기업)

▶ 금융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구기관 명의의 계좌 개설
- 연구비 관리계좌는 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반드시 등록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 관리계좌 개설

- 중소기업인 경우 기존 “신한 KAIA 수행 기관 전용통장특약계좌” 은 **사용 불가**

21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2)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카드 온라인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 최근 1년 이내 신한 연구비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법인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제출서류 없음)
- ▶ 신청 순서
 - ① 연구비관리시스템(<http://kaia.rndcard.com>)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② 마지막 단계에서 법인공인인증서 인증
 - ③ 신청 완료

연구비카드 오프라인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신청 가능 대상
 - 신한 연구비카드 최초 발급인 경우
 - 최초 발급은 아니나 최근 1년 이내 연구비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신한 연구비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나 법인공인인증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 ◀ 우편 주소 ▶

(우)0455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 2가)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공공영업팀
- ▶ 신청 순서
 - ① 연구비관리시스템(<http://kaia.rndcard.com>)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② 마지막 단계에서 [오프라인 신청서 출력] 클릭하여 신청서 출력
 - ③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우편주소지로 발송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카드 발급

- 전년도 과제의 연구비카드가 신한 연구비카드인 경우 “다년도카드재사용” 신청하여 계속 사용 가능
 - ※ 다년도카드재사용 신청 시 신청 당일 연구비 카드 사용 불가(익일부턴 사용 가능)
 - 신청 당일 카드결제 필요 시 고객센터 문의 (☎1566-0369)로 유선문의
- 이월과제의 연구비카드는 별도 신청하여 사용(본 과제 카드와 분리 사용)
 - 전년도의 이월과제가 재이용 되는 경우 “다년도카드재사용” 신청하여 계속 사용 가능

22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3)

연구비 지급 과정 및 사용방법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 지급 및 사용

- 기업부담금 납입 방법
 - ① 신연구비관리시스템 접속
- URL 주소 : kaia.rndcard.com
 - ② [연구비계좌관리] 화면에서 기업부담금 가상계좌 확인 후 납입
※ 반드시 해당 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 가상계좌로 납입
- 전문기관 담당자는 정부출연금을 총괄 과제 가상계좌(KAIA)로 지급 후 배분승인
- 중소·중견기업유형 - 건별지급
- 일반기업유형 - 일괄지급

23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4)

연구비 지급 과정 및 사용방법 [중소·중견기업유형]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 지급 및 사용

- 기업부담금 납입 방법
 - ① 신연구비관리시스템 접속
- URL 주소 : kaia.rndcard.com
 - ② [연구비계좌관리] 화면에서 기업부담금 가상계좌 확인 후 납입
※ 반드시 해당 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 가상계좌로 납입
- 전문기관 담당자는 정부출연금을 총괄 과제 가상계좌(KAIA)로 지급 후 배분승인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배분(연구비 가상계좌 내)
- 중소·중견기업유형은 연구비 사용등록 후 이체 실행시 건별로 연구비 지급

24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5)

연구비 지급 과정 및 사용방법 [일반유형]

※ 연구비 지급 방법

연구비 관리계좌 → 거래처 계좌 → 연구비 사용등록 (<http://kaia.mdcard.com>)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 지급 및 사용

- ❖ 기업부담금 납입 방법
 - ① 신연구비관리시스템 접속
- URL 주소 : kaia.mdcard.com
 - ② [연구비계좌관리] 화면에서 기업부담금 가상계좌 확인 후 납입
※ 반드시 해당 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 가상계좌로 납입
- ❖ 전문기관 담당자는 정부출연금을 총괄
과제 가상계좌(KAIA)로 지급 후 배분승인
-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비관리시스템
에서 연구비 배분(KAIA 가상계좌 내)
- ❖ 일반유형은 연구비 배분이 완료되면 연구
비 관리계좌로 일괄수령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25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5)

연구비 지급 과정 및 사용방법 [일반유형]

※ 연구비 지급 방법

연구비 관리계좌 → 거래처 계좌 → 연구비 사용등록 (<http://kaia.mdcard.com>)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 지급 및 사용

- ❖ 기업부담금 납입 방법
 - ① 신연구비관리시스템 접속
- URL 주소 : kaia.mdcard.com
 - ② [연구비계좌관리] 화면에서 기업부담금 가상계좌 확인 후 납입
※ 반드시 해당 연구기관의 기업부담금 가상계좌로 납입
- ❖ 전문기관 담당자는 정부출연금을 총괄
과제 가상계좌(KAIA)로 지급 후 배분승인
-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비관리시스템
에서 연구비 배분(KAIA 가상계좌 내)
- ❖ 일반유형은 연구비 배분이 완료되면 연구
비 관리계좌로 일괄수령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26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협약정보관리 (1)

신연구비관리시스템 최초 사용 방법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과제 인증 방법

- 연구비관리시스템 접속
 - URL 주소 : kaia.mdicard.com
 -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 받아 사용
 - *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의 ID는 연동되지 않음 (각 별도의 ID 사용)
- 인증센터에서 과제인증 후 시스템 사용 가능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협약정보관리 (2)

연구비 계좌 관리

[illegible]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계좌 관리

- ④ 협약관리 - 교재관리 - 연구비계좌관리
- ⑤ 기업부담금 납입시 기업부담금 가상계좌 확인 하여 입금
- ⑥ 연구비 가상계좌의 잔액 조회
- ⑦ 연구기관 운영계좌 등록 가능
- 기관관리자 ID로 접속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협약정보관리 (3)

연구비 배분 및 수령 (1)

[illegible]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 배분

- 과제구성도 기반의 연구비 예산 배분 기능을 구현함
- 해당 연구과제를 선택한 후
[연구비배분 및 집행] - [연구비배분] 선택

2. 연구비예산 배분 및 지급

- 전통기관(KAIA)은 종말과제의 정부 출연금 가상계좌로 연구비 지급
 -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종말과제로 접속하여 주관과제, 공동과제의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배분함
- 위탁연구기관의 위탁연구비는

배분 대상 X

 -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위탁연구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위탁연구개발비 지급
 - 위탁연구기관 형태에 따라 연구비 사용
 - 위탁연구기관이 해외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해외송금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협약정보관리 (4)

연구비 배분 및 수령 (2)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확인

- 민간부담금이 100% 선입금 확인된 경우 예산이 배분가능
- 영리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예산이 전문기관(KAIA) 가상계좌에 100% 입금하여야만 예산 배분지급이 가능함
- 미입금 안 연구기관을 제외하여 정부출연금 배분 가능

2. 연구비예산 배분 및 지급

- 주관·협동연구기관은 필요 시 정부출연금 분할 배분가능
- 가상계좌 1회 이체한도 (10억)
- 정부출연금 배분 시 10억 이하로 분할 배분

31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협약정보관리 (5)

참여연구원 관리 (1)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참여연구원

- 협약 시 KAIA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참여연구원 정보 연동
- 참여연구원 변경될 시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수정 입력

2. 미참여연구원

- 당해년도 협약기간 과제 참여/미참여연구원 관리 가능
- 미참여 연구원 발생시 참여 구분을 '미참여'로 선택하여 저장함
- '미참여' 전환 시 인건비 지급 및 연구비카드 발급/사용이 거절 됩니다 [오류 등록 주의 요함]

32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협약정보관리 (6)

참여연구원 관리 (2)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참여연구원 (등록)

신규 참여연구원 등록시 선택 입력

- 참여연구원의 생년월일 및 성별을 "YYYYMMDD", "남성/여성" 선택하여 입력
- 연구책임자 성명 (한글기준)
- 과제 접속 인증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이메일 정보 선택 입력

※ 인증정보를 Key값으로 하여 인증센터를 통한 협약과제 접속 권한 여부를 판단

33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협약정보관리 (7)

참여연구원 관리 (3)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참여연구원 (등록/수정)

참여연구원 정보 추가 등록 및 수정시 선택 입력

- 개인 기본정보 및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에 인증값 확인 필요
- MTS 정보확인용 통한 인증 확정

2. 참여연구원 (상세정보)

과제참여기간 정보 및 본과제 참여율 기준 급여 정보 입력 중요

- 미 입력시 인건비 등 지급 불가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조회 X → 연구비 지급불가]
- 급여안상, 승진 보직 변경에 따른 종역 변경 시 과제참여기간과 연계하여 수정 처리함 (단, 기 지급된 급여 월인 경우 수정 불가)

- 사전 급여, 수당, 활동비를 지급 받는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함

34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협약정보관리 (8)

참여연구원 관리 (4)

1 참여연구원 참여율(일괄적용)

- 참여연구원 년월 참여율 정보를 한번에 일괄 등록을 원할 때 사용 함
 - 지급구분 (지급, 미지급 선택)
 - 월급여, 참여율, 참여기간 입력

2 참여연구원 참여율 일괄 확인

- 각 참여연구원 별 해당 과제참여기간 정보 및 본 과제 참여율, 급여 정보 확인 가능
- 필요시 특정 월별로 월급여, 참여율, 현금, 현물 비율에 따른 금액을 수정 보완 할 수 있음
 - 단, 이미 지급한 급여월에 대한선 입력정보 수정 불가

화면 / 메뉴 세부내용

04

시스템 세부기능 안내

1

협약정보관리

➤

2

집행정보관리

➤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

결의/집행 정보조회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결의/집행 정보검색

- 검색조건 입력하여 결의/집행정보 조회
- 각 결의 정보의 집행방법 클릭시 해당 결의정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

37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2)

결의/집행 정보등록 (계좌이체) [1]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결의/집행 정보등록

- 계좌이체 기본 정보 입력
 - 출금금액: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
 - 사용방법,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중소·중견유형의 환급부가세는 **계좌이체 불가**
 - 중소·중견유형인 경우 환급부가세는 거래처로 별도 이체

2. 결의/집행 정보 상세 등록[1]

- 세목 및 사용용도 상세정보 입력
 - 사용금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
 - 사용금액만 연구비예산에서 차감
- 한 건의 계좌이체 거래 건에 대해 두 건 이상의 결의/집행정보 등록 가능 [행추가]

38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3)

결의/집행 정보등록 (계좌이체) [2]

화면 / 메뉴 세부내용

- 1. 결의/집행 정보상세등록[2]**
 - 세목 선택 후 사용용도별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을 선택[결의집행정보]
- 2. 상세 등록 - 지급인건비**
 - 사용용도별 외부, 내부 인건비를 입력
 - 결의일, 결의제목, 지급대상일 등을 선택하여 입력
 - 실제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
 - 퇴직금, 법정부담금 사용시 참여연구원의 실수령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 입력
- 3.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검색**
 - [협약관리] - [참여연구원관리]
 - 사전에 등록된 참여연구원 정보에서 검색을 통해 선택 입력
 - 참여연구원 미등록 또는 참여를 미입력한 연구원에게 인건비 등 지급 불가

39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4)

결의/집행 정보등록 (계좌이체) [3]

화면 / 메뉴 세부내용

- 1. 결의/집행 정보상세등록[3]**
 - 세목 선택 후 사용용도별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 2. 상세등록-[예]연구시설 장비**
 - 사용용도별 연구시설장비를 입력
 - 국내외 구분, 결의일, 결의제목
- 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장비 재료 구매의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 검색하여
 - 물품납품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Key값으로 거래 일자 금액 등으로 조회 가능

40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5)

사용용도별 필수입력 사항 정리 (1)

세목	사용용도	기본정보	집행정보	비고
인건비	내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 성명(예금주), 직급(입력사항반영) 또는 학위과정 [입력사항반영], 지급기준액(연봉총액(법정보함, 연봉/ 월봉복수기재)),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소수점 2자리 미만 절사), 참여기간(시작~종료)지급/마지급/ 연월구분 필요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결의제목, 소속,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 지급대상월,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이체 수 수표 [기본정보와 연계 관리]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 현황, 비통합기관 기준] 소속, 성명(예금주), 직급(입력사항반영) 또는 학위과정 [입력사항반영], 지급기준액(연봉총액(법정보함, 연봉/ 월봉복수기재)),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소수점 2자리 미만 절사), 참여기간(시작~종료)지급/마지급/ 연월구분 필요 계좌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결의내용(제목) < 통합관리기관 > 연구책임자, 지급처(사용처), 이체일자, 지급액, 이체수수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결의제목, 소속,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 지급대상월,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이체 수 수표 [기본정보와 연계 관리]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국내외구분, 전자세금계산서기본 정보(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 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41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6)

사용용도별 필수입력 사항 정리 (2)

세목	사용용도	기본정보	집행정보	비고
연구장비 재료비	시약 및 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S/W구입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국내외구분,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 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 금주 등은 중방파일 로 같음
	시제품·시작품· 시험실비 제작경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국내외구분,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 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 금주 등은 중방파일 로 같음
연구 활동비	국외출장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수령인, 이체일, 지 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 금주 등은 중방파일 로 같음
	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실문조사용역 실문조사답례품 임상실험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국내외구분,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 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 금주 등은 중방파일 로 같음

42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7)

사용용도별 필수입력 사항 정리 (3)

세목	사용용도	기본정보	집행정보	비고
연구 활동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해당없음	결의재목, 국내외구분,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임상실험 파시험자 비용 단기근로인력 (아르바이트)비용 설문조사 달례비	해당없음	결의재목,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전문가활동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광고료	해당없음	결의재목, 전문가 활동방법, 전문가_소속, 전문가_성명, 지급처(사용처), 이체일자, 지급액	활동일자, 장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논문게재료 및 논문 심사비	해당없음	결의재목,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참석 포함)	해당없음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교육시간시작/종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43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8)

사용용도별 필수입력 사항 정리 (4)

세목	사용용도	기본정보	집행정보	비고
연구 활동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해당없음	결의재목,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문헌구입비/ 기술도입비 세미나개최비 (회의장사용료,주차료, 연수막제작비용) 학원연임비	해당없음	결의재목, 지급처(사용처), 이체일,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위탁정산수수료	해당없음	결의재목,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연구과제 주진비	국내출장비	해당없음	결의재목, 출장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출장목적, 출장기간 시내외 구분, 출발지,도착지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사무용품비	해당없음	결의재목,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연구비카드 사용시 전표정보대체]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증빙파일로 같음

44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9)

사용용도별 필수입력 사항 정리 (5)

세목	사용용도	기본정보	집행정보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회의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회의일시, 참석자, 참석자내외구분, 소속기관명, 연구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아근 및 특근식대	해당없음	결의제목, 수령인, 이체일, 지급액	특근자명, 특근자과 학기술인번호, 특근시작/종료일시,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해당없음	결의제목, 전자세금계산서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공급자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상금, 장려금	해당없음	결의제목, 소속,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지급액	직위, 지급월,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45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0)

사용용도별 필수입력 사항 정리 (6)

세목	사용용도	기본정보	집행정보	비고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수행경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생시 - 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사업자번호, 지급처,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간접비	간접비 (비용리)	해당없음	결의내용, 지급처, 이체일, 수령인, 지급액	
	간접비 (영리기관) 인력지원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지급대상월, 이체일, 수령인,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간접비 (영리기관) 연구지원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전자세금계산서 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사업자번호, 이체일, 수령인,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간접비 (영리기관) 성과활용지원비	해당없음	결의제목, 전자세금계산서 기본정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등) 공급자명, 사업자번호, 이체일, 수령인,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등은 중방 파일로 같음

46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1)

**중소
중견**

결의/집행 정보등록(계좌이체) (5-1)

화면 / 메뉴

1. 결의/집행 정보상세등록(5)

 - ☞ 모니터링 상태가 [확인완료] 건 선택
지급 버튼을 클릭
→ 이체팝업 화면으로 이동

2. 집행정보 확인 (편뱅킹)

 - ☞ 출금정보(연구비계좌) 확인
 - ☞ 입금정보(거래처계좌) 확인
 - ☞ 이체 버튼 클릭 → 법인공인인증서 인증
검증 후 '처리되었습니다' 메시지
창 표시 '확인'

3. 이체결과 확인 [편뱅킹 확인]

 - ☞ 모니터링상태 [지급] 상태로 변경됨
- 결제대금 이체 & 결제일 도래되면
모니터링상태변경 : 확인완료→지급
- 결제일 이후 입력시 확인완료 약알에
지급처리

47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2)

일반유형

결의/집행 정보등록(계좌이체) (5-2)

화면 / 메뉴

1. 결의/집행 정보상세등록(5)

 - ☞ [확인완료] 상태 이후에 이체 지급이
동시 처리
- 결의 집행정보 팝업창 정보 입력 후 연구비
집행 정보 확인 완료 종료
 - ☞ [모니터링상태]가 [지급] 상태로 변경
- 모니터링상태가 [지급] 또는 [지급취소]
완료된 경우 KMA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용
내역 연동(1일 소요)

48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3)

중소
중견

이체처리결과 조회

화면 / 메뉴

1. 이체처리결과 조회

- 해당과제에서 실제 평행킹 이체된 결과를 검색 조회

2. 집행결과 확인 (평행킹 확인)

- 처리상태에 따른 코드 정리
 - 정상 이체가 정상적으로 완료 건
 - 실패 이체가 실패한 건
 - 대가 모니터링 상태가 (확인완료)인 상태로 다건 이체가 가능한 상태
 - 응답없음: 응답코드가 '___' 인 상태로 평행킹 서버로부터 응답결과를 못 받은 상태

49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4)

결의/집행 정보등록 (연구비카드)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카드 등록

- [연구비배분 및 집행] - [연구비집행] - [결의/ 집행 정보등록(연구비카드)]
- 연구비카드 사용내역 목록에서 집행내역 선택

2. 연구비카드 사용내역 처리

- 연구비카드 사용내역 목록에서 결의할 집행건 선택하여 하단의 "결의/집행정보" 에서 집행등록
 - 세목 및 사용용도별 처리 방법은 계좌이체 건과 동일함
 - 결재대금 이체 & 결재일 도래되면 모니터링 상태변경: 확인완료-지급
 - 결재일 이후 입력 시 확인완료 익일에 지급처리

50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5)

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이체

중소
중견

화면 / 메뉴

1. 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이체

- [카드 결제대금 이체] 버튼 클릭
→ 이체창에서 이체를 진행
- 출금정보 확인 (연구비계좌정보)
- 입금정보 확인 (카드결제계좌 정보)
- [이체] 버튼 클릭
 - 법인공인인증서 인증 후 이체 진행
 - 매달 청구일 전에 반드시 카드결제대금 이체를 통해서 카드결제계좌로 청구금액을 입금해야 함 **(미처리 시 연체 발생)**
- 카드 청구데이터 활용 (금액/계좌수정 불가)
 - 카드결제계좌 변경 등은 Cyber Desk에서 진행

화면 / 메뉴

51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6)

연구비카드 환급부가세 환입

중소
중견

화면 / 메뉴

1. 연구비카드 환급부가세 환입

- 카드결제시 환급부가세 분리결제 불가
→ 환급부가세를 환입용 가상계좌로 환원
- 당월 연구비카드 사용건에 대한 징병 등록 및 카드결제대금 이체 완료 후 연구비카드 환급부가세 환원 절차 진행 가능
- 환입용 가상계좌에 입금된 환급부가세는 입금 익일에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자동 환원 완료
 - 환입용 가상계좌에 환원한 연구비는 입금당일에만 취소 가능

화면 / 메뉴

52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7)

집행취소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집행취소

- 해당 연구과제를 선택한 후 [연구비배분 및 집행-결의/집행 정보 조회]에서 해당건을 선택하고 지급취소
- 지급이 완료된 집행건에 대하여 지급취소 가능
- 또는 연구비카드 입력건에 대하여 "카드사용등록초기화" 가능

2. 집행정보 확인

- [결의/집행 정보] 목록에서 지급취소하려는 "집행정보" 선택하여 하단의 '지급취소' 클릭
 - 지급 취소금액 입력 후 "지급취소" [부분취소 가능]
 - 원 건과 취소 건이 한 쌍으로 표시
- 지급취소 한 사용금액은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여 잔액 일치 관리

53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8)

환입용 가상계좌 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지급취소 → 환입계획 생성

- 지급취소 시 환입계획(입금계획) 생성 → 환입용 가상계좌로 취소금액 환원
- 연구비카드건 지급취소시 공급가액만 환입계획(입금계획) 생성 → 부가세는 카드 결제대금 이체 후 당월 중 환급부가세 환입시 환입

2. 입금 취소 등

- 입금계획 취소
 - 진행상태가 입금계획일 경우 입금계획 취소 가능
 - [입금계획 취소] 클릭하여 진행
- 입금 취소
 - 진행상태가 입금완료일 경우 입금 취소 가능
 - [당월 입금건만 취소 가능]
 - [입금 취소] 클릭하여 진행
- 처리완료
 - 환입금 입금 후 익일에 완료처리

54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19)

예산실적대비표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예산실적 대비표

- ☞ [연구비배분 및 집행]-[예산실적대비표]
- ☞ 연구비집행에 따른 각 세목별 예산대비 잔액 현황을 조회 관리 함
- ☞ 검색조건 입력
 - 사용기간 : 달력 아이콘 클릭
 - 1개월, 3개월 등 단위지정 가능

2. 예산실적 대비표 활용

- ☞ 해당 조건에서의 협약과제 예산과 집행 현황 파악
- ☞ 집행방법별 연구비 집행 내역 확인
- ☞ 세부비목별내역서로 전체 집행내역 확인
 - 세부비목별내역서의 필요번호는 결의/집행 정보 조회시 확인되는 번호와 일치

55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20)

당해년도 이자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이자 등록(영추가)

- ☞ 당해년도 연구비 예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가능

2. 이자내역 [상세등록]

- ☞ 발생한 이자에 대해 해당 월, 발생금액 등록 대상 세목 정보 확인 후 등록가능
 - "저장" 을 통해 발생한 이자 내역을 등록하여 발생내역 생성
 - * 중소·중견유형은 자동으로 목록생성
 - 가상계좌 잔액 확인시 집행잔액과 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자발생액 확인 필요
 - 당해년도 본 예산 모두 소진 시 "예산반영" 을 통해 저장된 이자를 해당 과제에 반영하여 연구비 집행

56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21)

이월금 관리 (1)

<2018.01.01 이후 신규/계속 과제>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이월금관리] 메뉴를 통하여 당해연차 이월과제의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이월금 이체

중견기업인 경우

- <2018.01.01~2018.07.30 신규/계속과제 연구비를 이월한 경우>
 - 전년도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이월연구비를 출금하여 당해연차 이월과제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이체
- <2018.07.31 이후 신규/계속과제 연구비를 이월한 경우>
 -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이월금관리] 메뉴를 통하여 당해연차 이월과제의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이월금 이체

그 외 연구기관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 이외 연구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등록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이월금 관리

- 이월과제 정보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면 연구기관별 이월 연구비 가상계좌 자동 생성
 - 당해연차 과제정보 전송 완료 후 가능
- 2017.12.31 이전 신규/계속 과제인 경우 전년도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출금하여 당해연차 이월과제의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이체
 - 단, 중소·중견을 제외한 연구기관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등록

57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22)

이월금 관리 (2)

이월금관리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이월금 이체 방법

- 전년도과제로 접속하여 [이월금 관리] 메뉴 선택
- 이체가능금액을 조회하여 가상계좌내 연구비 잔액을 확인
 - 특약계좌출금제한인 경우 잔액 조회 불가, 별도 확인
- 이월금 이체를 클릭하여 이체실행
 - 당해연차 이월연구과제의 정부출연금 가상계좌로 이월금 이체
 - 이월금 이체는 단 1회 가능
 - ※ 이월금 이체전 이월금 및 이월과제정보 반드시 확인

58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23)

연구비 반납 (1)

2018.01.01 이후 신규/계속 과제

2018.12.30 이전 종료 과제

- 해당연차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출금하여 전문기관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반납(이체)

2018.12.31 이후 종료 과제

※ 과제종료일이 2018.12.31 이후인 경우 연구기관 형태에 따라 반납(이체)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반납] 메뉴를 통하여 연구비 반납(이체)

중견기업인 경우

- <2018.07.31 이후 신규/계속 과제의 경우>
 -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반납] 메뉴를 통하여 연구비 반납(이체)
- <2018.01.01~2018.07.30 신규/계속 과제의 경우>
 - 해당연차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출금하여 전문기관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반납(이체)
- 그 외 연구기관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 이외 연구기관은 해당연차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출금하여 전문기관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반납(이체)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 반납

- 해당연차 과제의 정산결과가 확정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관리 시스템으로 정산결과 정보가 자동 연동
 - 연구과제 시작, 종료일 및 연구기관 형태에 따라 연구비 반납
 -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비 반납
 - 또는 별도의 계좌이체 방법을 통한 반납

59

신한카드

KAIA 新연구비관리시스템 집행정보관리 (24)

연구비 반납 (2)

연구비 반납

2018년 12월 31일 현재 연구비 관리 현황

구분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구분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화면 / 메뉴 세부내용

1. 연구비 반납 실행

- 연구비 가상계좌 잔액조회 후 반납실행
 - 특약계좌출금제한인 경우 잔액조회 불가
 - 별도의 방법으로 잔액 확인 후 진행
 - 계좌잔액 > 반납액
 -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한 반납실행 가능
 - 계좌잔액 < 반납액
 -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한 반납실행 불가
- 연구비 반납이 최종 완료된 경우 연구비계좌가상계좌 또는 특약계좌출금제한의 기업지분 잔액 회수 가능

60

신한카드



기타 (FAQ) 자주 묻는 질문 (1)

〈연구비 카드발급〉

01 연구비 카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2 기존 발급받은 신한카드의 연구비 통합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03 연구비 카드의 결제 계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연구비 카드는 1)기존 신한카드 법인한도 부여 및 2)신한카드 활동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은 법인 공인인증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신청 가능
- ▶ 최초 연구비카드 신청 법인은 1회에 한하여 연구비카드발급 신청과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 연구비 통합카드 여부는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카드번호 16자리를 불러주시면 확인가능 합니다.
- ▶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시 결제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kaia 시스템에서는 등록불가) 단,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연구비관리계좌를 카드결제 계좌로 등록하시면 되나, 중소·중견기업은 별도의 카드결제 계좌를 등록하고 매달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비 가상계좌에서 카드결제 계좌로 이체 하여 합니다

62

기타 (FAQ) 자주 묻는 질문 (2)

<사용자 등록/수행과제 검색>

01 최초 아이디 생성은 어떻게 부여 하나요?

▶ 최초 아이디 생성은 시스템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하면 수행중인 과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 kala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 확인가능]

02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 했는데 과제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단계> kala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과제정보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전송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연구책임자 사용자 등록 후 왼쪽 상단 '인증센터' 에서 '미 인증과제/사업' 탭에서 인증 실시합니다.

03 참여연구원 ID로 로그인 했는데 과제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단계> kala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과제정보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전송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연구책임자 사용자 등록 후 왼쪽 상단 '인증센터' 에서 '미 인증과제/사업' 탭에서 인증 실시합니다.
<3단계> 연구책임자ID로 해당 연구원에 대해 참여연구원 등록을 합니다

63

신한카드

기타 (FAQ) 자주 묻는 질문 (3)

<인건비 지급>

01 참여연구원 정보는 어떻게 등록 되나요?

▶ 최초 과제협약 시 등록된 연구원 정보가 시스템 연동을 통해 kala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신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변경되는 정보는 신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추가, 변경 관리됩니다.
[KAIA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참여연구원 정보변경 불가]

02 인건비를 수정하는 실 지급계좌로 이체해야 하나요?

▶ 신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인건비 지급 시, 지급계좌는 연구원 개인 계좌 (주,부 2개 계좌)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사유에 한하여 수행기관의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세목별 계좌종류

- 인건비, 연구수당, 국내외여비, 아근 및 특근식대 : 연구원 개인계좌
- 간접비/자체법인카드 : 연구기관 법인계좌 입력
- 물품구매 등 : 거래처 계좌 입력

03 연구원별 월인건비 차이 등으로 월별 관리가 어려운 기관인데, 어떻게 입력 하나요?

▶ 신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참여연구원의 지급기준액과 월참여율로 월별 인건비 지급한도가 결정되므로, 협약시점에 신연구비관리시스템에 월 참여율을 자동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급한도는 신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지급기준액과 월참여율 변경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4

신한카드

기타 (FAQ) 자주 묻는 질문 (4)

<연구비 집행/취소>

01 | 정상 집행 완료한 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결의 후 집행이 완료된 건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단, 거래처로부터 연구비가 환불되었을 경우 원 건에 대한 지급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체취소, 부분취소] 원 건을 모르는 경우는 여입 처리를 통해 연구비 안도를 증액가능하며, 지급취소와 여입 처리는 별도의 결의등록 절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02 | 해외 구매시 집행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 먼저 연구기관의 자금으로 선결제(해외송금) 후 확정된 구매금액을 연구비계좌에서 연구기관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03 | 시스템을 통한 평행강이체 가능시간이 있나요?



▶ 시스템을 통하여 세목별 이체 및 연구비카드 결제금액 이체가 가능하며, 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평행강이 가능합니다.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합니다

03

성과활용 및 관리(기술료)



Contents



01. 기술료 제도 안내

- I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정의
- II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및 소유
- III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 IV 기술료 감면 및 사용
- V 기술실시계약 절차
- VI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02. 성과입력 안내

- I 성과조사 안내
- II 담당 연구과제 확인 방법
- III 성과 입력 방법
- IV 부록 - 개인명의 특허 성과 관리

01

기술료 제도 안내 (기술실시계약 절차 및 방법)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정의



기 술

- 「기술의 이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술"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기 술 이 전

- 「기술의 이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기술이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정의



기술실시 계약

-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관리규정 제3조 제4호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관리규정 제3조 제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료는 성과에서 나온 수익을 연구개발 재투자, 참여연구원 보상 등에 활용하여 연구자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창출

연구수행 → 연구개발 성과물 → 기술이전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 → 연구수행

5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정의



이전기술의 유형

산업재산권 이전

특허(실용신안 등) 등을 사용하여 특정제품을 생산, 양도, 판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실시권 허여(Licensing)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노하우 이전

경제적 가치고 높은 기술정보를 제공(영업비밀) 하며 독점성/배타성이 없어 비밀 유지가 핵심

노하우포함 산업재산권 이전

특허명세서만으로 제품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하우기술을 포함하여 이전
(중소기업 이전시 일반적으로 적용됨)
- 기술제공자가 후속교육을 지원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짐

구분	특허	Know-How
권리 확정성	확정적	비 확정적
존속기간	특허권리기간	비밀이 유지될 때까지 영구
배타성	「특허법」에 의한 절대적 배타성	계약에 의한 상대적 배타성
비밀성	공개	비밀
실시계약	간단	복잡(Case by Case)
전환	Know-How로 전환 불가	특허로 전환 가능

6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정의



기술이전의 유형

전용 실시권

특허법상 보호되는 독점실시권, 특허권자의 약정에 의해 독점적 실시권 소유

통상 실시권

독점력이 배제된 것 실시권으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체결을 통해 실시권 소유

양도

기술 매매, 증여 등, 권리를 완전히 이전

기술지도

특정된 권리가 아니라 노하우 등을 지도

공동연구

기존기술 기반 또는 새 기술 공동연구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자	특허권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설정등록	효력발생 요건	채권적
기존 실시권의 존재	가능	가능
재실시 허락	특허권자 승낙 필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승낙 필요

7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정의



기술료의 유형

고정기술료

해당 기술의 사용대가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형태
일시불(Lump Sum Payment)와 분할금(Down Payment)로 구분

경상기술료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판매가,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비율로 기술료를 계산하여 지불

혼합기술료
(고정+경상)

기술이전계약 성사시 로열티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

구분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장점	- 사전에 기술가격을 알 수 있음 - 경쟁기술과 가격비교 가능 - 경상기술료보다 낮을 수 있음 - 기술제공자에게 장부를 보여줄 의무 없음	- 기술제공자도 기술 도입자와 동일한 위험부담을 지님(낮은 생산량, 파산 등) - 노하우의 결함 발생시 로열티율 조정 가능
단점	- 기술제공자의 개량기술 개발의지 저하	- 기술제공자의 투입 기여율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음

8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및 소유



유형적 결과물

- 연구기자재
- 시설 및 장비
- 연구시작품
- 연구노트 등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 경우 협동연구기관) 소유 원칙
- 단, 참여기관(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이 소유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장비는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가능

무형적 결과물

- 지식재산권
- 연구보고서 판권 등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 경우 협동연구기관) 소유 원칙
- 단, 참여기관(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 주도적 개발,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여** **단독소유** 가능
- 주관(협동)과 참여기관 **공동소유** → 장관 승인 사항(2014.8.12 이전협약)
-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
-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소유**
-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개정 2014.8.12)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

9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및 소유



지식재산권의 유형

구분	개념	요건	효력	담당기관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결과인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청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출원일로부터 10년	특허청
상표	자타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	자타상품의 식별력, 부동등록 사유 미해당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10년씩 등록갱신)	특허청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	특허청
S/W (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권리변동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 별도의 요건 없음	공표된 때부터 50년	한국 저작권 위원회
기타 저작물	건축물,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등 도형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별도의 요건 없음	공표된 때부터 50년	한국 저작권 위원회
영업비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보유한 기술정보(생산, 제조공정, 방법) 또는 경영정보(마케팅전략, 고객명단 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충족시 까지	특허청
연구노트	연구실을 단위로 아이디어, 연구진행방법, 데이터 해석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노트	적절한 관리와 보존, 기재변경 불가, 제3자에 의한 확인과 서명	특허와 영업비밀의 근거자료로 활용	-

10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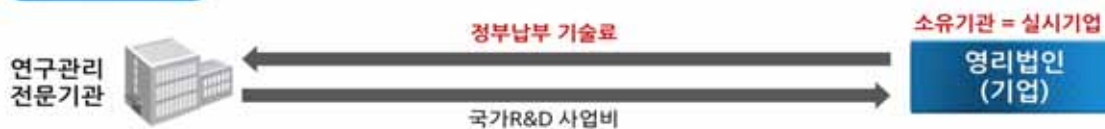


기술실시계약 형태

01 제3자 실시 기술실시계약 체결 (소유기관 → 실시기업)



02 직접실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제출 (전문기관 ← 소유기관)



11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기술료 (실시기업 → 소유기관)

- 2012. 7.18 이전 협약: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출연금 이상
- 2012. 7.18 이후 협약: 기술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 합의하여 정함

전문기관 납부 기술료

2012. 7.18 이전 협약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납부 면제*
- 영리법인: 징수한 기술료의 30% (직접실시: 기술료 총액의 30%)

* '13년 7월 이후 과학기술인공제회 납부(9%) 폐지

2012. 7.18 이후 협약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납부 면제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 2015.12.22 이후 협약은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5년 이내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매출정률로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가능 (직접실시에 한함)

12



I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료 감면 및 사용



기술료 감면

2015. 9.9 이후 협약

조기납부 감면

- 90일 이내 납부 : 40% 감면
- 1차년도 이내 납부 : 30% 감면
- 2차년도 이내 납부 : 20% 감면
- 3차년도 이내 납부 : 10% 감면

2018. 9.13 이후 협약

청년고용 감면(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청년고용
- 2년간 기술료 징수 유예
-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기술료 사용

2012. 7.18 이전 협약

- 영리법인 : 30% 이상 전문기관 납부, 35% 이상 연구원 보상금, 나머지 재투자 등
- 비영리법인 : 50% 이상 연구원 보상, 나머지 재투자

2012. 7.18 이후 협약

- 영리법인 : 전문기관 납부 금액 나머지 연구원 보상금 등 활용
- 비영리법인 : 정부출연금 지분 50% 이상 연구원 보상금, 나머지 금액은 재투자 등 활용

13

KAIA

I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료 감면 및 사용



기술료 사용

2014. 8.12 이후 협약

- 영리법인 : 전문기관 납부 금액, 나머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비영리법인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 (개정 2014.8.1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연구원 보상, 10%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4

KA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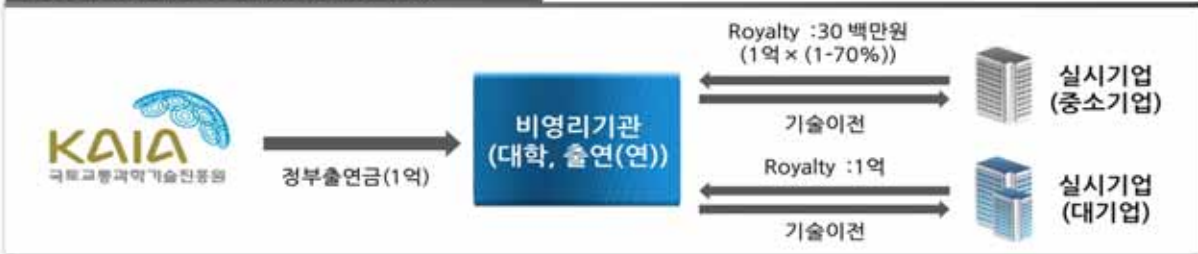
참고 01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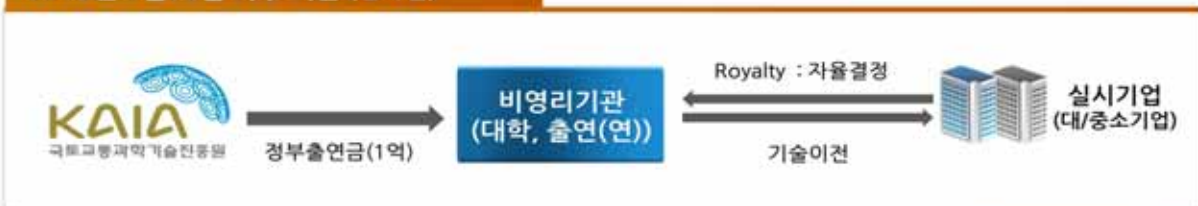
비영리기관-실시기업간 기술실시계약



2012년 7월17일 이전 기준 (협약일)



2012년 7월18일 이후 기준 (협약일)



★ 정부납부 기술료 : 면제

15



참고 02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영리기관-실시기업간 기술실시계약(1)



2012년 7월17일 이전 기준 (협약일)



16



참고
02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영리기관-실시기업간 기술실시계약(2)



2012년 7월18일 이후 기준 (협약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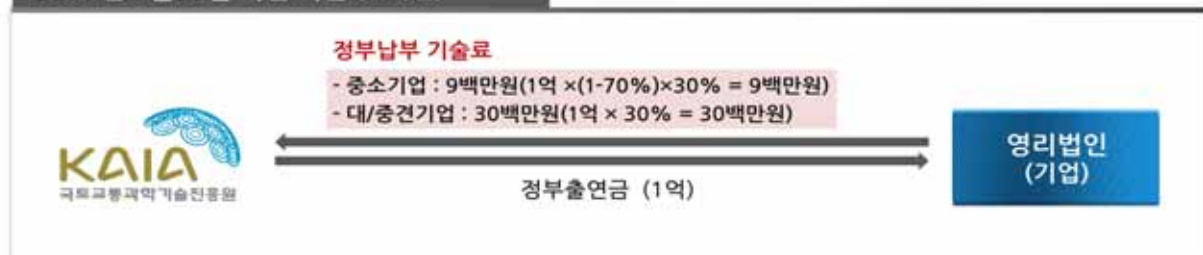
참고
03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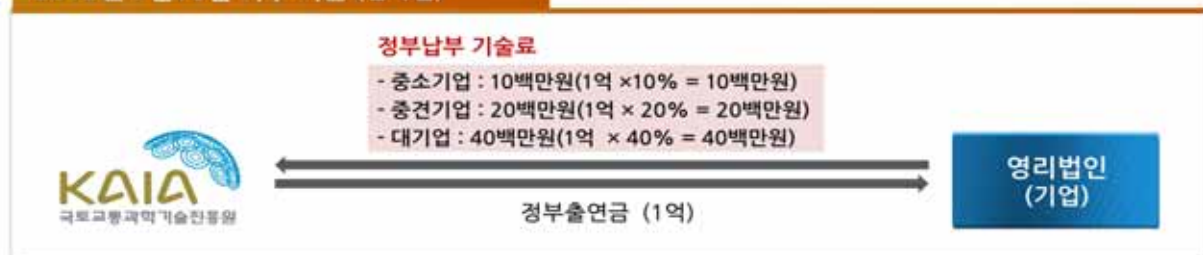
영리기관 직접실시



2012년 7월17일 이전 기준 (협약일)



2012년 7월18일 이후 기준 (협약일)



18

참고
04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적용원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부칙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 12. 7. 18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신규정 적용**
-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 7. 18 이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음**

해 석

- 12. 7. 18 시행 후 **신규/계속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신규정 적용**
-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 7. 18 이후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음**

19



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절차



기술실시계약 절차

- 01 이전대상기술 발생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이전 담당부서에서 수요자 발굴
 - 대상기술의 수요자와 기술이전 협의 및 징수조건 협상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 → 실시기업)
- 02 전문기관 검토
 - 계약서의 관련 법규, 규정 준수 여부 및 산정기술료 적정성 검토
 - 기술료 감면 검토(일부기술 실시, 조기 일시납 여부 등)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 → 전문기관)
- 03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보고
 - 계약체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 → 실시기업)
 - 계약서 사본 전문기관 제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04 기술료 징수 및 보고
 - 기술료 징수(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 → 실시기업)
 -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 → 전문기관)
- 05 기술료 사용 결과 보고
 - 기술료 사용(참여연구원 보상, 제투자 등)
 - 차년도 2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 → 전문기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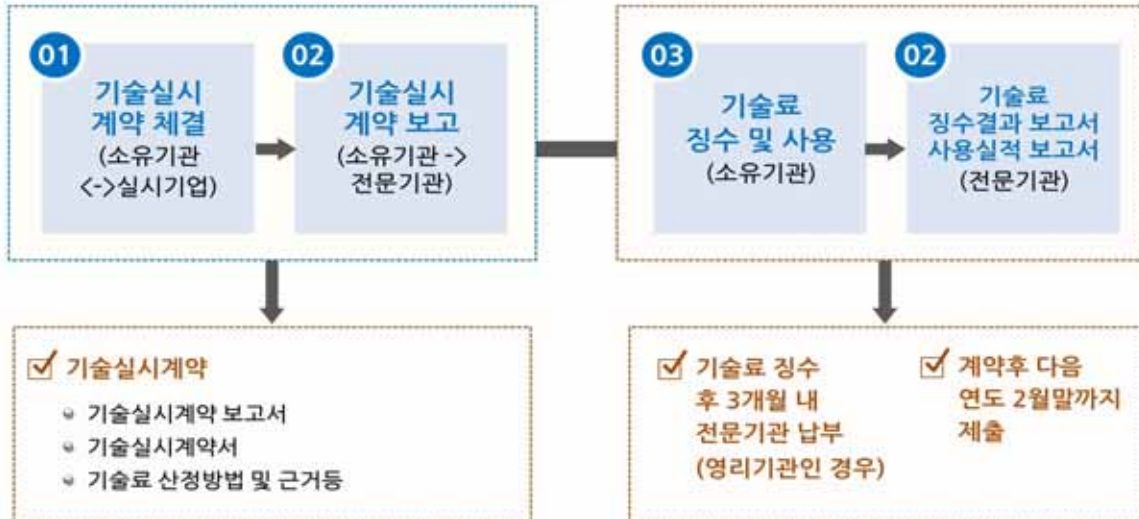


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절차



3자 실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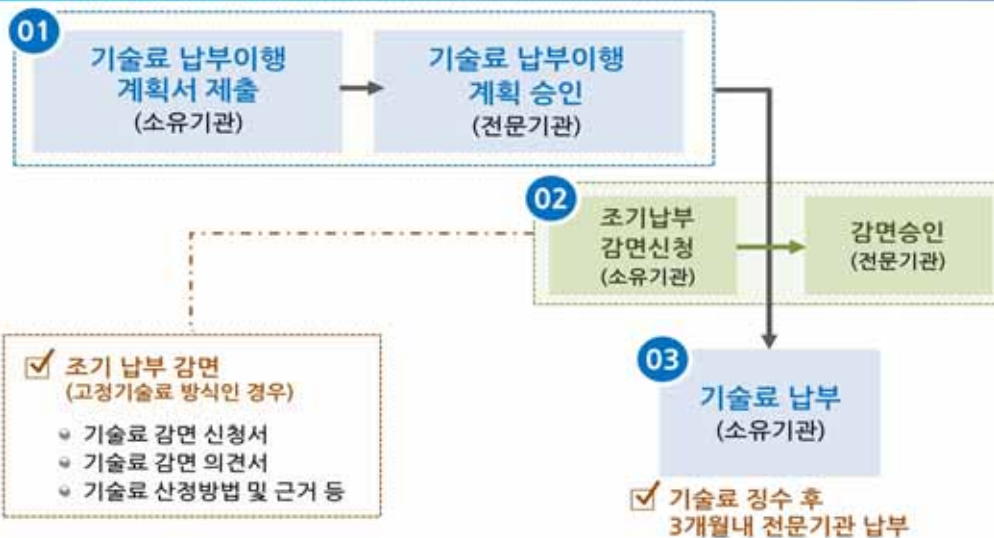


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실시계약 절차



직접 실시(자체 실시)



22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별지 22.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술실시계약 대상과제의 최상위 과제현황	기술실시계약 대상 성과물 도출과제 현황	기술실시계약 현황	기술실시계약시 특기사항을 간략히 제시 (예, 공동소유, 매출경률비율의 연차별로 상이한 경우등)
기술로 총액: 감면 전후의 기술로 총액 제시 (예, 중소기업 감면을 득한 경우 감면 후 금액 제시)	기술로 계획: 연도별 기술로 징수계획을 제시하되 치수가 많은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관련 성과물: 실시대상 기술의 지식재산권등 증빙명 제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23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별지 18.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

기술실시계약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와 연계

실시대상 기술의 내용 구체화

기술로 총액: 감면 전후의 기술로 총액 제시 (예, 중소기업 감면을 득한 경우 감면 후 금액 제시)

기술로 계획: 연도별 기술로 징수계획을 제시하되 치수가 많은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관련 성과물: 실시대상 기술의 지식재산권등 증빙명 제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24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illegible]

실시계약 대상과제의 최상위 과제 현황

실시계약 대상 성과물 도출과제 현황

기술실시계약 현황

- 기술료 징수방법: 영리법인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사용할 경우 고정기술료 또는 혼합 기술료 방법 중 전문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결정
- 기술료 총액: 감면 전후의 기술료 총액 제시 (예, 중소기업 감면을 득한 경우 감면 후 금액 제시)
- 기술료 계획: 년도별 기술료 징수계획을 제시하되 치수가 많을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 관련 성과물: 실시대상 기술의 지식재산권등 증빙명 제시

실시대상 기술의 내용 구체화

-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 번호 기재
(예, 기술이라 함은 ~한 내용임을 기재)

25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illegible]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와 연계

- 실시계약 대상과제 현황을 작성하되, 해당기술에 투입된 정부출연금 내역은 "기술료 산정방법 및 근거"에 제시

실시계약 대상 성과물 도출과제 현황

실시기업 현황 및 감면 사유 등 기재

중소기업 기술사용에 따른 감면 신청

- 기술실시계약서 제출 이전에 기술료 총액 변경을 위해 감면 신청 필요
- (보임2) 기술료 산정방법 및 근거서류에 실시대상 기술의 내용 및 기술료 총액(연차별 투입연구비 내역) 등 제시
- (보임3)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총괄현황, 연구수행계획 등 제시

26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성과관리 및 확산 방안 기술실시계약 용역 등 범위

실시기업 현황

실시기업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로 감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

중소기업 기술사용에 따른 감면의 경우

- 기술사용기관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세무사 확인 대차대조표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 등)

기술로 초기납부에 의한 감면의 경우

- 고정기술로 방식에 의한 기술실시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실시계약 서류 사본) 등

27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성과관리 및 확산 방안 기술실시계약 용역 등 범위

기술로 산정방법 및 근거서류 작성법

실시대상 기술의 내용	실시대상 기술의 구성, 기술 작동내용, 활동처 등 -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제시
시장현황 및 규모	- 실시대상 기술의 적용분야(시장) 및 해당 분야(시장)에 대한 설명 - 근거, 출처 등 해당 적용분야 및 시장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 필히 기재 - 실시대상 기술이 적용 되는 시장 규모 - 형성되지 않은 신규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이 만들어지는 근거 - 또는 개척해야 할 경우 유사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을 근거로 산출 - 근거, 출처 등 해당 적용분야 및 시장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 필히 기재 - 시장규모는 해당 기술의 시장점유 정도를 예측하여 기술실시기간 동안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치 제시
기술로 총액	- 해당 기술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년차별로 제시 - 기술로 총액 산정시 기업부담금은 제외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기술활용에 따른 매출규모	"시장현황 및 규모"와 연계 - 해당기술의 시장 점유율 등과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을 년도별로 제시
매출대비 기술로 징수계획	- 실시기간 설정과 기술로 징수규모 제시 - 기술로 총액 징수를 위해 몇 년간 매출 대비 몇 %의 기술료를 징수할 것인지 계획 제시 (총 실시시간, 매출점유비 제시)
전문기관 납부계획	- 년차별 기술로 징수결과에 대한 전문기관 납부 계획 제시 - 년차별 징수한 기술료의 전문기관 납부(기술로 사용에 해당)을 기재
여러기관 공동사용 계획 (해당하는 경우)	- 동일한 기술을 여러기관이 동일 시점에 공동사용하는 경우 - 공동사용기관 현황, 사용기관별 기술로 분담비율 등 제시
확인사항	- 기술로 산정방법 및 근거서류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등의 내용과 연계 - 기술로 산정방법 및 근거서류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의 "붙임2"에 해당하며, "기술실시계약서" 제5조(기술로 납부)의 매출액 산정과 연계 - 기술로 산정방법 및 근거서류에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는 "연구개발소유기관 장"의 직인날인 필요

28

72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참여기업 기술허여 동의서

실시기술 도출과제명

- *허여*하고자 하는 기술이 도출된 과제명 제시

실시기술명

- 실시대상 기술명 및 지식재산권 등록번호 기재
- 실시기술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에 따른 번호 기재

동의에 대한 내용

- 실시대상 기술에 대해 제3자 허여에 동의함을 기재
- 실시대상 기술에 대한 우선실시권을 갖는 참여기업이 제3의 기업에도 통상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음을 확인

확인사항

- 기술실시계약 동의서는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이 도출된 과제에 기업부담금을 분담한 참여기업 외의 자가 해당 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실시권을 갖는 참여기업이 해당 기술의 제3자 사용에 동의함을 의미
- 해당 연구개발에 기업부담금을 분담한 모든 참여기업의 동의 필요하며, 동의서 작성 후 반드시 해당 참여기업 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

29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일



01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1건 이상 반드시 기술실시계약 체결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1항
- 기간내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려운 경우 '기술사업화계획서' 제출 (제출 후 기술사업화 계획서 상의 내용이 수행되는지 점검)

02

기술실시계약 발생시 15일 이내 전문기관 보고

-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계약서 사본 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제출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관리규정 제4조(기술실시계약)

03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체 → 3개월 이내에 이체(개정 2014.8.12)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관리규정 제12조(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제2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 제3항

30



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성과 입력 안내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성과조사 안내 (개요)



목 적

- 국가 R&D사업의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평가)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조사대상

- 계속과제 및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 과제
- 기획과제, 정책과제, 중단과제, 실패과제 제외

조사기간

- 성과입력: 연중 상시 입력
- 진행원에서는 연 4회, 성과 입력 안내공문 발송
- 성과정보 검증 및 정경: 연중 상시 실시

조사내용 및 제출주체

꼭! 확인해 주세요!

	조사내용	제출주체
계속과제	성과 입력	주관연구책임자 ※
종료과제	성과입력	주관(협동) 연구책임자 ※ (연구단/사업단 과제인 경우 세부과제별 협동연구책임자)

※ 제출주체인 주관(협동)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책임자에게 공지하여 모든 연구성과가 빠짐없이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조치하고, 입력된 성과를 확인 후 최종 제출함

문의처

- 성과 입력 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조사 대행기관(㈜더비엔아이) : 02)3476-5500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에어 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식정보실 : 031-389-6336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성과조사 안내 (제출내용)



제출내용

성과 입력

종료
과제계속
과제

구분	제출 내용
경제적 성과	- 사업화/제품화(매출액) - 현장적용 비용절감/수입대체효과
공공적 성과	- 법 제정 및 개선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 정책 제안 및 채택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S/W, 상표, 서비스 등) - 기술인증(신기술, 표준) - 시제품 제작
학술적 성과	- 국내외 학술지 게재 -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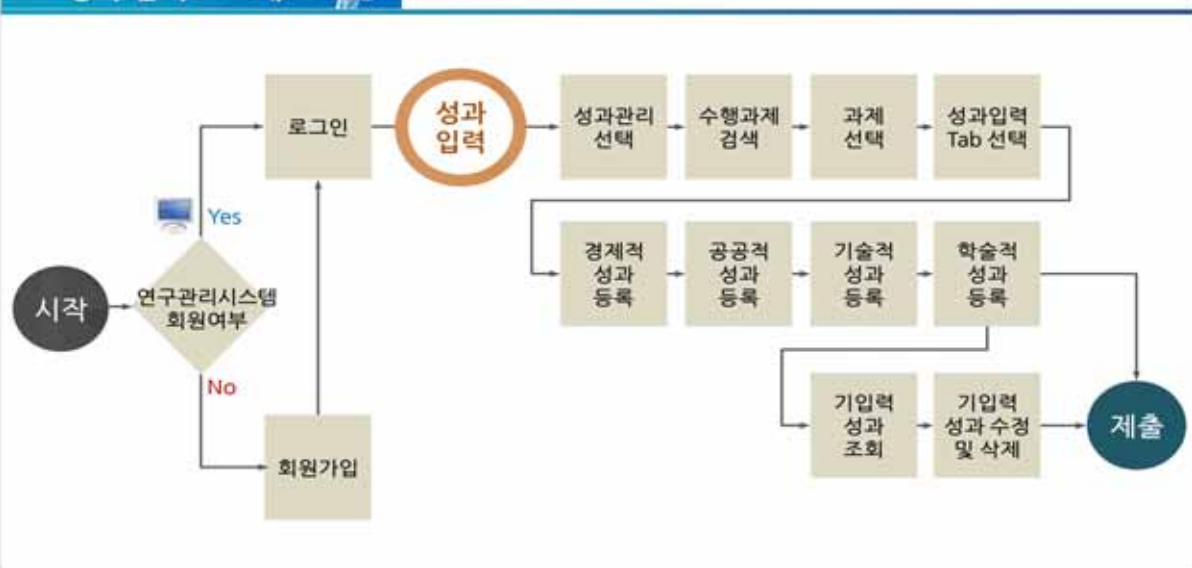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성과조사 안내 (성과 입력 프로세스_계속과제)



성과 입력 프로세스



34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담당 연구과제 확인 방법



01

"[붙임1] 조사대상과제 목록"에서 "주관(협동)연구책임자" 옆에 표시된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활성화된 창에서 본인의 이름을 클릭하여 담당과제를 확인합니다.

	A	B	C	D	E	F
1	No	사업명	승인과제명	세부과제명	주관(협동) 연구기관	주관(협동) 연구책임자
3	2	건설기술혁신 사업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석과 전	수문변동 상황화 및	텍스트 요청자수 정렬(↓)	
5	4	건설기술혁신 사업	대형 지방구조물 대입강(大梁梁) 조립	대형 지방구조물 대입	텍스트 내림자수 정렬(↓)	
7			정밀 측정용성 산정 기반 연구	정밀 측정용성 산정	텍스트 내림자수 정렬(↓)	
8					주관(협동) 연구책임자에서 필터 해제(↓)	
9					해 기종 등차수	
10					텍스트 필터(↓)	
11					(모두 선택)	
12					☒ 집OO	
13					☐ 배OO	
14					☐ 이OO	
15					☐ 학OO	
16						
17						
18						
19						
20						

02

과제가 확인되면, 연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성과 및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다음 장에서 설명)

35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성과 입력 방법



01 성과 입력

① [My R&D] 선택

-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
- [MY R&D] 클릭 → 과제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My R&D' section of the R&D management system. It displays a table of projects with columns for project name, status, and dates. The 'My R&D' tab is selected, and a list of projects is shown below the table. The interface includes various filters and search options to help users find their specific projects.

36



② [성과관리] 선택

- 해당 수행 연차 클릭
- [과제수행] → [성과관리] 클릭

37

③ [과제체계]-[성과]-[등록]

- * 과제체계는 현재 수행중인 과제이며, 기종료과제는 종료된 과제 목록이 보여질

탭 설명

활용보고서 : 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
과제에 대해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01 성과 입력

④ [성과담당자 입력]

[성과담당자] 등록 후 저장

* 성과담당자 등록은 필수이며, 작성되어 있지 않을 시 성과등록을 할 수 없음

39



01 성과 입력

⑤ [성과입력]

[입력] 클릭 → [성과] 등록

* 계속과제 및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 과제에 대해 발생한 성과를 상시 입력가능하며 총 24개의 지표 중 해당하는 성과항목에 등록

40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성과 입력 방법



01 성과 입력

⑥ [성과입력 세부항목]

- ☞ 체크된 사항(필수입력사항) 기입
- ☞ [저장] 클릭 → 성과 등록

41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성과 입력 방법



02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입력

① [활용보고서 등록] 선택

- ☞ [등록] 클릭 → 활용계획서/보고서 작성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
- ☞ 활용계획서/보고서는 [요소기술추가] 버튼을 클릭 후 입력

42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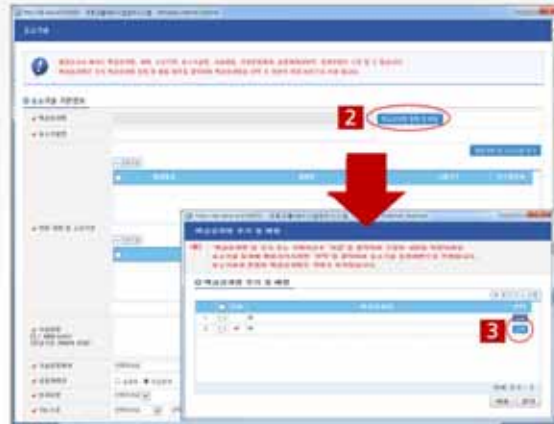
성과 입력 방법



02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입력

② / ③ [핵심성과명 등록·매핑] 선택

- ☞ 체크된 사항(필수입력사항) 기입
- ☞ 핵심성과명은 [핵심성과명 등록 및 매핑] 클릭 → 추가 및 등록이 가능
- ☞ 핵심성과는 [선택] 클릭 시, 요소기술에 매핑
 - 매핑된 성과는 삭제가 되지 않음



43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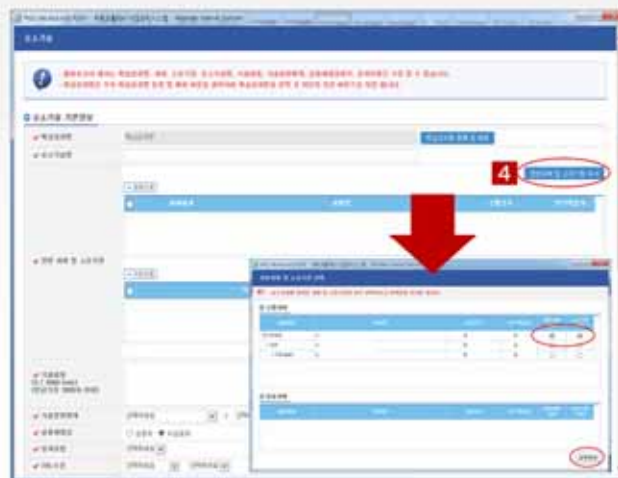
성과 입력 방법



02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입력

④ [관련과제 및 소유기관 추가] 선택

- ☞ [관련과제 및 소유기관 추가] 클릭 → 요소기술에 관련된 [과제 및 기관] 선택 → [선택완료] 클릭



44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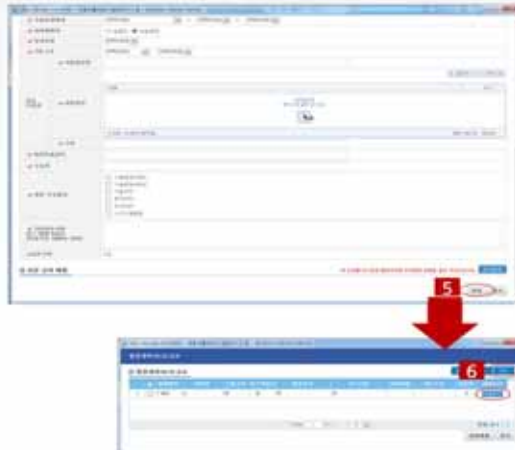
성과 입력 방법



02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입력

⑤ [저장 및 삭제]

- [기술내용], [기술분류체계], [실용화대상], [성과유형] 등등 체크사항(필수입력사항) 모두 입력 → [저장] 클릭
 - [저장] 클릭 시 [활용계획서/보고서] 목록에 등록되며, [상세보기] 클릭 시 수정이 가능
- 등록된 [요소기술] 체크 후 [삭제] 클릭 → 삭제



45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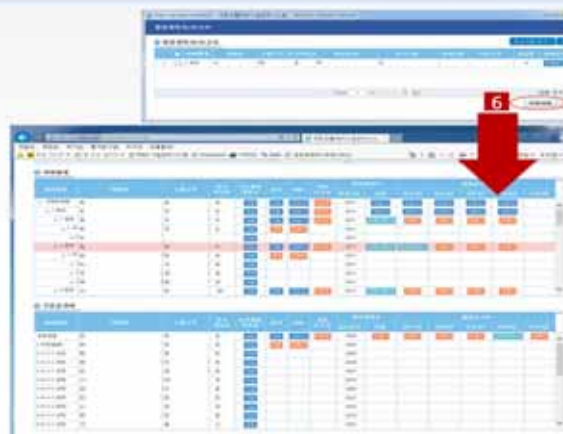
성과 입력 방법



02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입력

⑥ [최종제출] 선택

- [최종제출] 클릭시 전문기관에 제출되며 자동승인 됨(상태는 [등록] → [검토완료]로 변경되며, 담당자가 검토 후 [재접수] 요청 가능)
 -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복사되어 [활용계획서/보고서] 목록에 나타남
- 최종제출시 [추가] 또는 [삭제]가 불가하며, 담당자가 [재접수]로 상태를 변경해주어야만 수정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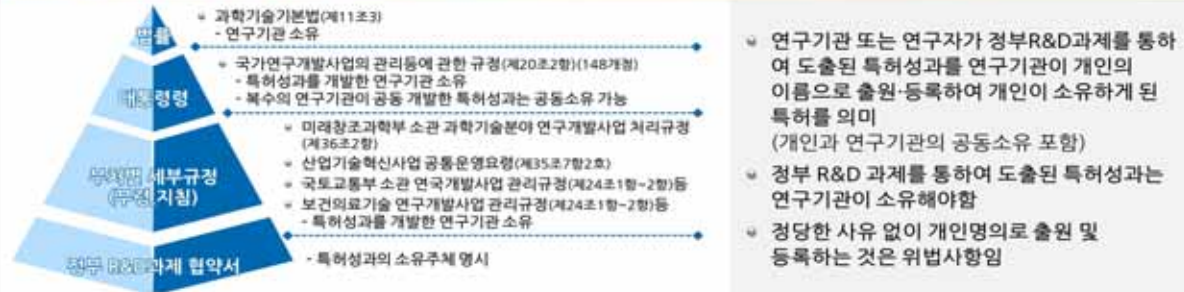


46



IV 부록 - 개인명의 특허 성과 관리

개인명의 특허성과 정의



개인명의 특허성과 문제점

- 법률적 측면** / 협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 경제적 측면** / 특허성과의 법적 소유권을 개인이 보유함에 따라 연구기관의 권리행사 제약
- 공공적 측면** / 정부 R&D 연구성과(공공자산)의 사유재산화를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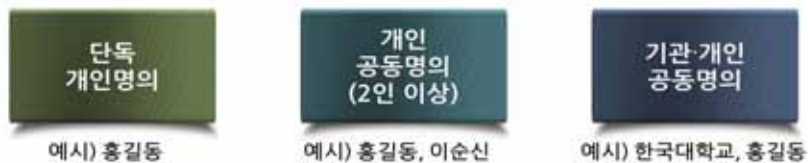
47



IV 부록 - 개인명의 특허 성과 관리

개인명의 특허성과 유형

- 특허 소유권자에 개인명의가 포함된 경우



- 출원 특허인 경우 출원인, 등록 특허인 경우 권리권자를 의미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련 조치

인정여부 (적법성)판단	정부R&D특허성과를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한 것이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근거 검토를 통한 적법성 판단
명의 환원	적법성이 불인정된 경우,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특허성과 명의환원
제재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관 및 관계자 대상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 * 15.12.22이전 협약과제(1년), 이후 협약과제(2년)

48



I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부록 - 개인명의 특허 성과 관리



특허성과 명의변경 시 방법

- 특허청을 통하여 변경 신청
- 특허의 권리상태 (출원, 등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구 분	출원인 변경신고	권리이전 등록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좌동
신청서	-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서식20호)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서식8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특허사무소)	- 좌동
처리기간	- 총 6일 (대리인 소요기간 별도)	- 좌동
수수료	- 매건 13,000원	- 권리당 10,800원
구비서류	- 권리관계변경신고서 - 출원인 변경의 원인 증명서류 - 제 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 - (대리인 활용시) 위임장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 - 양도인 인감 및 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양도·양수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문의처		

* 문의처: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상담시간 09시 ~ 18시 30분)

49



Thank You



관련서식 다운로드 :

www.kaia.re.kr →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 → 서식

04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 업 컨설팅평가 안내 (’20년 계속과제)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기술사업화 지원 시점



3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개요

-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을 통한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서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실환경 테스트 등을 지원

'18년 주요 실적

- '18년 사업화 매출액 587억원, 누적 매출액 3,633억원 달성(투입 예산 대비 약 3.1배 매출)
- '18년 국가 R&D사업 상위평가 '우수' (과기부, '18.6)

연도별 지원금액



4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사업환경 변화 (일몰)

01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2019년 일몰의 의미?

- 2019년 부터 신규 과제 지원 중단
- 계속과제는 과제 종료시까지 지원



5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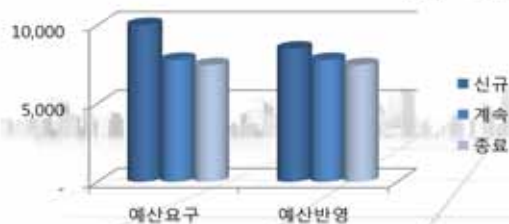
사업환경 변화 (일몰)

02

계속과제에 미치는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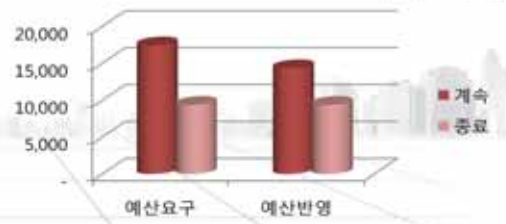
기존(2018년)

- 정부예산이 과제별 소요금액보다 적을 때 부족한 예산을 신규과제에서 감액
- (단위 : 백만원)



변경(2019년)

- 정부예산이 과제별 소요금액보다 적을 때 부족한 예산을 계속과제에서 감액
- (단위 : 백만원)



6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컨설팅평가('20년 계속과제)

01

평가 방향

- 획일화된 과제관리 및 평가절차 지양
-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방향을 조언하는 컨설팅 평가 도입

컨설팅평가

- 📁 컨설팅 중심의 평가 및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요구 확대
- 📄 기술개발 방향, 실용화/사업화 가능성 제고 방안 등 컨설팅 의견서 제공
- 기술신용평가 및 서면평가 실시(컨설팅 의견서의 질적 완성도 제고)
- 📁 '19년 중간모니터링 대상 26개 과제 시범 적용

7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컨설팅평가('20년 계속과제)

02

평가 절차

기존

대면평가

- 오전(자료검토)
- 오후(대면평가)

결과 알림

개선

[1단계] 기술신용평가 (TCB)

- 기술신용평가 실시<주관기관→기술신용평가기관>
- 기술신용평가 보고서 제출<주관기관→진흥원>

[2단계] 서면평가

- 기술신용평가 보고서 및 평가자료 검토<평가위원>
- 위원별 컨설팅 의견서 서면 제출<평가위원>
- ※ 연구자는 참석하지 않음

[3단계] 대면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연구자·평가위원>
- 종합의견서 작성(평가위원 토론을 통한 컨설팅 의견서 수정·보완)<평가위원·간사>

결과 알림

- 평가 결과 알림(종합결과서, 컨설팅의견서)<진흥원→주관기관>

8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컨설팅평가('20년 계속과제)

03

주요 변경 사항

기술신용평가 실시

- ☞ 기술신용평가 실시 후 평가서를 중간모니터링 자료와 함께 제출
 - ☞ 기술신용평가 대상기업은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주관 또는 공동) 중 1개 이상 지정
 - ☞ TCB평가 공공R&D과제로 신청, 평가기간 약 1주일 소요
 - 평가기관별 요청자료와 평가비용 상이, TCB 평가비용(80만원 내외)은 연구활동비로 집행
 - 기술신용평가기관 :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컨설팅의견서 활용

- ☞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 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는 중간모니터링 결과서와 별도 제공
- ☞ 종합결과서 → 필수 보완, 컨설팅의견서 → 참고자료로 활용

9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컨설팅평가('20년 계속과제)

04

중간모니터링 일정(예정)

- | | |
|-----------------------|---------------------|
| ☞ 컨설팅평가 안내 및 서류 제출 요청 | ☞ '18. 09. 27. |
| ☞ (연구기관별) 기술신용평가 실시 | ☞ ~'18. 10. 11. |
| ☞ 평가서류 접수 | ☞ ~'18. 10. 25. |
| ☞ 서면평가 실시 | ☞ '18. 11. 4. ~ 6. |
| ☞ 대면평가 실시 | ☞ '18. 11. 7. ~ 14. |

10



I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주요 공지사항

01

청년고용 3종 패키지

청년 고용



의무고용 조건

- 2022-12-31까지 공고 과제

현금감면 조건

- 2022-12-31까지 협약 과제
- 의무고용 비대상 기업도 적용 가능

기술료감면 조건

- 2022-12-31까지 납부계획제출 과제
- 2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 (청년기준)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시행기간) 한시적 적용(2018~2022년)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시행내용)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현금부담감면 연계고용, 기술료감면 연계고용
- (적용기준) ①세무과제 기준 ②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 ③기업 또는 기업 컨소시엄
- (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률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기타금급 포함)
- (적용기준) ①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②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적용내용)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 회수
- (적용기준) ①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②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적용내용)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차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액 전액 회수

11

KAIA

I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주요 공지사항

0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기관 선택 폭 증대

- 중소기업 R&D과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화('19년 신규과제부터 전면 시행)
- 기존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K-Biz 중소기업 중앙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등
- 신한은행(現 우리원 연구비시스템 운영) R&D전용 보험상품 신설('19.3)

국립과학기술개발원(KAIA)사업의 참여기업 고객
성공 비즈니스의 꿈에
신한은행의 이행보증 엔진을 달자!

이행보증, 이행보증, 이행보증, 이행보증, 이행보증, 이행보증

신뢰에 신뢰를 뽐냅니다~
신한플러스이행보증

문의처
신한은행 본점 TEL: 02-370-3111 FAX: 02-370-4294-4385
Email: fgs17@shinhan.com
지역 영업담당자 연락처 TEL: 02-370-3106
기업 운영 센터 TEL: 021-381-3617

12

KAIA

I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주요 공지사항

03

2019 국토교통 기술대전 참가신청

행사개요

- 일자 : '19.05.29(수)~31(금), 3일간
- 장소 : 일산 KINTEX 2 전시장 10홀 및 3층 회의실
- 내용 : R&D 성과전시, 학술·정책 세미나, 지식포럼

신청방법

- 수요조사서 작성 및 제출(김은혜, 031-389-6343)
- ※ 비즈니스관 독립부스 제작 예정,
기술대전 참여비용(홍보비)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



세부 행사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전시	• 미래기술관 - 국토교통 미래기술, 혁신기술 전시
	• 비즈니스관(중소기업관) - 전시 및 부대행사(발주처 설명회 등) 일원화, 중소기업·신기술 인증기관 중심 구성
	• 기술체험관 - 관람객 대상 기술체험관 확대
비즈엑스포	• 국토교통분야 기업과 국내·외 주요 발주처의 교류 강화 및 홍보 - 발주처 설명회, 기술이전 설명회, 투자설명회
학술·정책 세미나	•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공유를 위한 산·학·연 학문적 이슈 발굴·토론의 장
지식포럼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트렌드 전망을 주제로 한 영상 릴레이 특강

13

KAIA

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술소개자료(SMK, Sales Material Kit)

'18년 주요 실적

- '17.7~'18.6 국토교통 R&D 종료과제 대상
제6차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 서면(국·영문) SMK 100건, 동영상 30건 제작
- 중소기업의 주요 타겟시장에서의 SMK 활용도 증진 위해
제3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번역서비스 제공



14

KAIA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대형실험시설 이용 기술시험비 지원

개요

- 국토교통 R&D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시험비용 및 시험컨설팅 지원

'18년 주요 실적

- 시험비 지원 실적 57건, 약 5.1억원 결감(시험비 50% 지원)



15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

'18년 주요 실적

-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 실적 : 31건
 - 찾아가는 기술설명회 27회 개최(총 52개 기술, 27개 기관)
 - 발주처 초청 설명회 3회
 - 현장 설명회 1회 개최 (부산환경공단)
- 계약 4건, 매출액 10,500백만원 달성



16



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금융(투융자) 지원

개요

- 중소기업 대상의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기관에 추천하여 사업화 자금(대출, 투자)을 지원
- 협업 금융기관(8개) : 기술보증기금,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업데이터, 요즈마그룹 한국법인



IR 발표

'18년 주요 실적

-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8회 개최
 - 41개 중소벤처기업, 39개 투자기관 참여
- 국토교통R&D 수행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수요조사 6회 실시
 - 31개 중소기업, 394억원 투·융자 요청
- 기술금융 연계 총 125억원 달성(투자 92.5억, 대출 32.5억)



VC 투자심사

17



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술가치평가

개요

- 국토교통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기술가치평가로 기술시장 및 중소기업 활성화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로 변환하고 이를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에 활용



기술가치평가 포럼

'18년 주요 실적

- 기술가치평가 본격 수행
 - 국토교통R&D(종료과제) 사업화 유망기술 가치평가 12건, 건설신기술 대상 우리원 자체 기술가치평가 7건, 총 19건
- 기술가치평가 홍보 및 교육 실시, 시스템 개선(온라인 접수),



기술평가 신청 시스템(홈페이지)

18



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필요기술 이전 상담 및 컨설팅

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의 보유기술에서 발굴하여 중소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한 상담회 추진



기술이전 상담 및 컨설팅

'18년 주요 실적

- 기술이전 상담 및 컨설팅 총 20회
 - 기술이전 의향서 6건, 기술이전 계약 1건
- 국토교통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장화 방지를 위한 기술거래기관 지정(산업부) 및 기술거래·평가팀 신설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19



V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해외기술로드쇼

'18년 하반기

- KOTRA에서 개최하는 '한-아세안 프로젝트 플라자'와 연계하여 해외기술로드쇼 개최
 - 일자: '18.10.30(화)~31(수)
 - 장소: 필리핀 마닐라
 - 참석자: 필리핀 및 아세안지역의 인프라, 에너지, 환경 분야 발주처 65개사
 - 행사내용: 비즈니스 상담(수출, J/V설립, 공동연구 등)

주요 성과

- 기술상담: 현지기업과 비즈니스 상담 및 바이어 매칭
- 계약협약: 비즈니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자료 공유 및 사업협의 진행



1:1 비즈니스 상담회

'19년 상·하반기

- 상반기 해외기술로드쇼 개최
 - 일자: '19.05.13(월)~17(금)
 - 장소: 베트남 하오니, 라오스 비엔티엔
 - 행사내용: 발주계획 공유, 보유기술 소개, 비즈니스 상담(수출, J/V설립, 공동연구 등)
- 하반기 해외기술로드쇼 11월 개최 예정(KOTRA와 연계하여 1:1 비즈니스 미팅 중심 구상)

20





05

KAIA 기술인증관련 제도 소개



목 차

- 1. 기술인증제도
- 2. 건설신기술 제도
- 3. 건설신기술과 특허 비교
- 4. 건설신기술 혜택
- 5. 최근 제도개선 내용
- 6.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기술인증제도



● 추진목적

- 건설교통분야 민간의 자율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R&D 결과물의 실용화를 높이기 위해 기술인증제도를 도입
- 인증된 신기술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와 기술 보호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인증현황

건설신기술 860건	교통신기술 45건	녹색 인증 400건	교통카드 인증 127건
---------------	--------------	---------------	-----------------

● 기대효과

- 민간 우수기술의 사장방지 및 민간 기술개발 의욕 고취
- 민간 기술개발 경쟁에 따른 기술수준 향상
- SOC 시설물 공사비 절감 및 수명연장으로 국가예산 절감
-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조성

기술인증제도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녹색인증
제도시행	1989년	2010년	2010년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보호기간	최초 8년, 연장 3~7년	최초 5년, 연장 1~7년	최초 3년, 연장 3년
심사절차	3단계 심사 (1차→현장→2차)	2단계 심사 (기술→현장)	2단계 심사 (현장→기술)
심사기준	1차 :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2차 : 현장 적용성, 보급성	기술 :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 : 현장 적용성, 보급 활용성	현장 : 기술 또는 사업의 실제 서류 : 기술우수성, 녹색성
주요혜택	- 기술사용료 청구, 자금지원 권고, 예산절감시 기술개발보상 - 수의계약, 지명경쟁, 제한경쟁 (건설)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우대 - PQ점수 혜택 (건설과 교통 적용분야 상이) - NET 마크 사용		- 국가 R&D 신기술 신청 시 청단 기술성 인정 부여(10점) - PQ 점수부여(신인도, +2점) - 우수조달물품 선정 시 1차 심사면제가능

5



건설신기술제도

- 추진체계
- 신청자격
- 심사기준
- 심사절차
- 신기술 사후관리
- 신기술 심사위원 관리



제도개요



● 목적

- 기술개발자의(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 지정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있다고 판단 되는 건설기술

● 지정 분야

- 토목 : 1)도로, 2)철도, 3)항만 및 해안, 4)상하수도, 5)수자원, 6)교량, 7)터널, 8)토질 및 기초 9)조경, 10)측량
11)토목구조물 보수 보강 등 11개 중분야 73개 소분야
- 건축 : 1)건축계획 및 관리, 2)가설시설물, 3)조경, 4)기초, 5)철근콘크리트, 6)철골, 7)조적, 8)마감
9)방수, 10)특수건축물, 11)해체, 12)보수보강 등 12개 중분야 53개 소분야
- 기계설비 : 1)건설기계, 2)플랜트, 3)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4)환경기계설비 등 4개 중분야 15개 소분야

7

신청자격



기술개발자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신청자격 완화

- 최초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련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 받아 소유**한 자
- 국가R&D의 성과물인 경우 기술의 소유자로부터 **실시권** 및 신기술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 필요

8

추진체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신기술 신청서 접수 및 반려
- 건설신기술 심사위원회 운영
- 건설신기술 홍보 및 사후관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관양동 1600) 하나은행 4층 [031-389-6481~5]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 건설신기술 제도 운영관리 총괄
- 지정증서 발급
- 건설신기술 법규개정 및 업무 제도개선 등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신교통개발과
[044-201-3555~6]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 신기술 협약자 관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02-516-2490]

9

심사기준



▶ 지정심사

1차
심사위원회

- 신규성(40점): 기존기술과 차별성, **안전성**, 독창성, 자립성
- 진보성(40점): 품질향상, 개량 정도, 첨단기술성
- * 첨단기술성(10점): 국가R&D결과물 (R&D 참여실적 증명서, 연구개발 협약서, 최종평가결과 등), **스마트 건설기술**, 녹색인증, 환경신기술은 안점부여
- 경제성(20점): 설계시공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2차
심사위원회

- 현장 적용성(70점):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편리성, **환경성**
- 보급성(30점): 시장성, 공익성

▶ 연장심사

2차
심사위원회

- 기술우수성(70점): 기술수준, 품질,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 활용실적(30점):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 금액, 건수
- 가 점(10점): 사후평가결과, **기술가치평가**, 전시회나 설명회 참여실적

* 1차 심사 생략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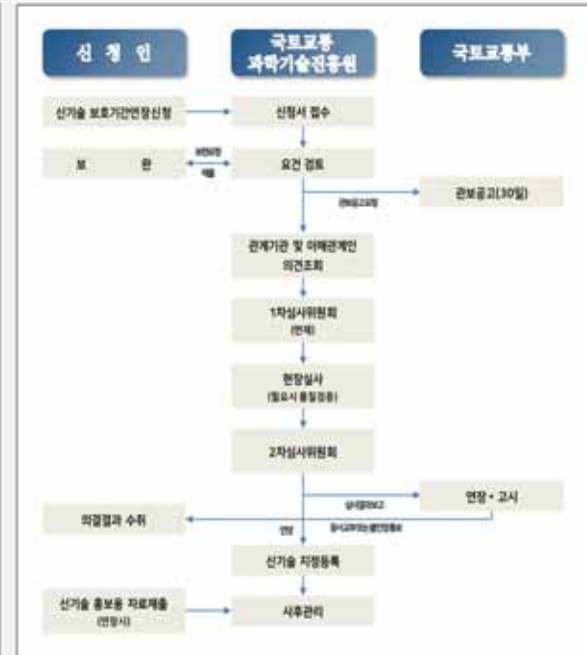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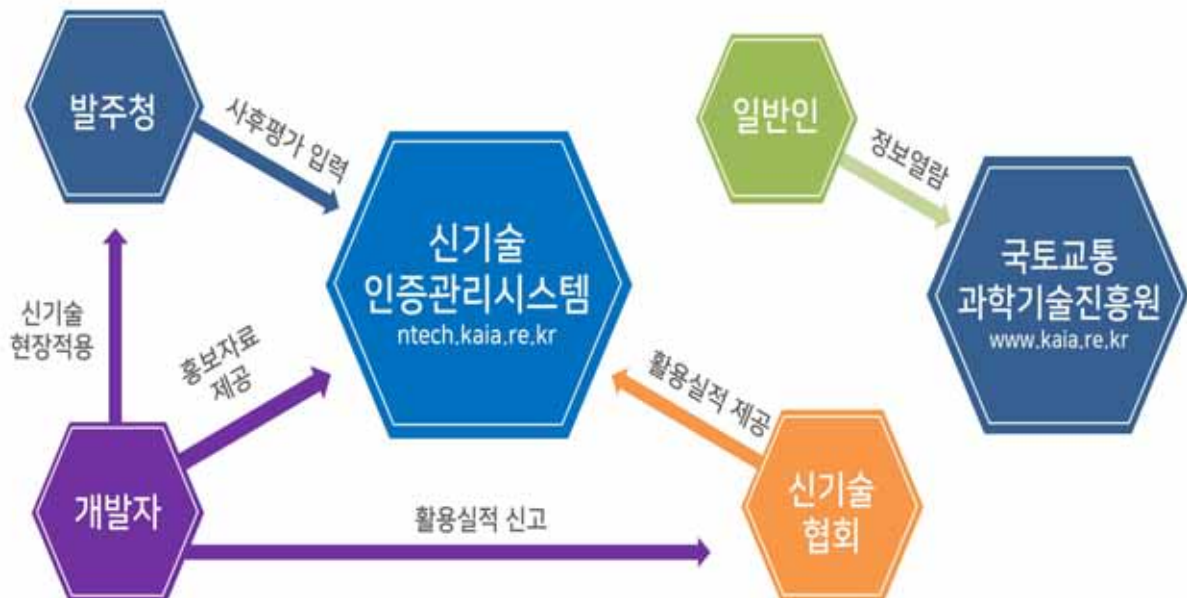


● 연장심사 절차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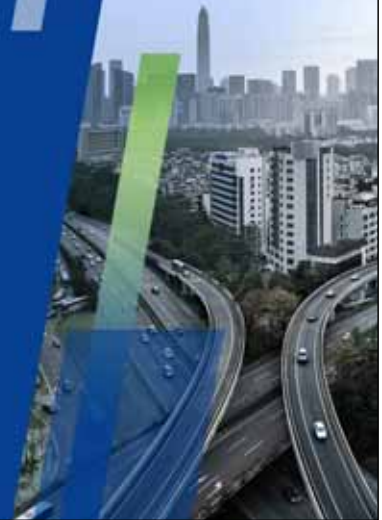
신기술 사후관리



12



특허와 건설신기술 비교



특허와 건설신기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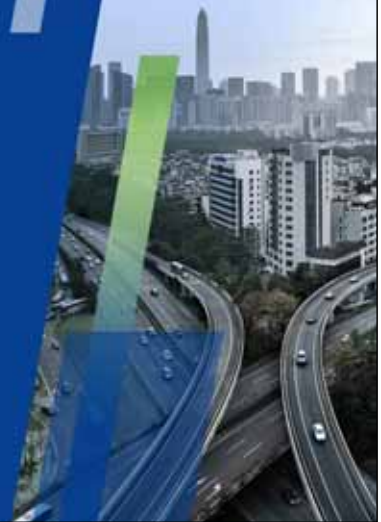
● 특허와 신기술 비교

구분	특허	건설신기술(NET)
근거법령	특허법	건설기술진흥법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지정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 보급성
대상	발명 (구체화된 아이디어)	건설기술
존속(보호)기간	20년	8년(활용실적에 따라 3~7년 연장 가능)
심사 소요기간	18개월 내외(우선심사의 경우 4~6개월)	5~6개월
독점 배타적(VS. 침해)	직접적(침해소송 또는 형사)	간접적(기술사용료 또는 민사)
실시권 설정	법적 보호 (통상 · 전용)	불가능 (계약 · 협약자)
활용율	3~6%(추정)	80.4%(최근 3년 평균)
기술 우선적용	없음	발주기관 우선사용 권고, 설계반영 의무화, 시험시공 권고 등
심사방법	심사관 1인에 의한 서류조사 및 검토	기술의 시험·검증 및 현장적용 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심사

14



건설신기술 혜택



건설신기술 혜택



01 기술사용료 \$

- 신기술 개발자 보호를 위해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2항
-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마련·시행
 -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

02 기술사용 협약

- 발주기관이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필요
-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 낙찰자 결정후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체결토록 해야함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4호

03 인증마크

- 신기술 인증을 받은자는 제품 등에 인증마크 사용 가능
 -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건설신기술 혜택



04 신기술 우선적용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4항
-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에 유사한 기존기술보다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5항

05 담당자 면책

- 신기술 적용관련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해당기관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6항

06 설계 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3항
- 발주청 또는 설계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비교·분석 내용을 포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1항

17

건설신기술 혜택



07 시험시공

- 발주청에게 신기술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4항 및 시행령 제36조

08 수의계약

- 진흥법 제14조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09 PQ 점수 부여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입찰자격 사전심사 요령 * 조달청 지침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10 자금지원 요청

- 신기술개발자에 대해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5항

18



최근 제도개선 내용



최근 제도개선 내용



건설신기술 진흥법 개정('18.12.31) 및 하위법령 개정 중

■ 신기술 사용협약 등 개정 주요내용

- 기술개발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기술 사용 협약 증명서 발급(법 제14조의2 신설)
- 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법 제79조, 제89조 개정)

■ 법 시행('19.7.1)에 맞춰 현재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중

- 개발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건설업 등록증, 장비 소유 등)과 신청서류 (사용협약서, 기술전수 확인서 등) 규정 (영 제36조의2 신설)
- 신기술 사용협약증명서 신설 (영 제117조제1항), 신기술협약 체결자에게 신기술 건설공정 참여 허용 (영 제34조 제3항),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의무화 (영 제34조제6항)
-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중 '시험시공 결과'는 '현장 시공실적'과 선택적으로 제출 (영 제31조제4호)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6월 개정안 공포 예정

최근 제도개선 내용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추진 국토부 방침, '19.2.26

■ 문제점

- 신기술 개발의욕 저하, 발주청의 신기술활용 저조, 지정취소 등 신기술심사 강화 요구 등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 개선내용

-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발주청이 50% 부담('19.3월 신청접수)
- **(발주청 신기술 활용 유도 인센티브 도입)** 개발단계 신기술도 담당자 면책 적용 확대 추진('19.6월 법개정), 발주청(국토청) 신기술 활용 성과계획에 반영, 우수자 포상으로 활용 유도 ('19년)
-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신기술 지정 심사 강화, 검증절차 운영으로 분쟁 조기해소('19.5월 규정개정)
-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유도 ('19.5월 규정개정)

21

최근 제도개선 내용



< 현행 심사기준 >			< 심사기준 개선안 >		
구분	검토항목	세부항목	검토항목	세부항목	
1차 심사	신규성 (40점)	기존기술과 차별성(15) 개발정도(15) 독창성과 자립성(10)	신규성 (40점)	최종 안전성(15) 최종	
	진보성 (40점)	품질향상(20) 공기단축(10) 첨단기술성(10)	진보성 (40점)	품질향상(15) 개발정도(15) 첨단기술성(10)	
	경제성 (20점)	설계시공비 절감(10) 유지관리비 절감(10)	경제성 (20점)	설계시공비 절감(15) 유지관리비 절감(5)	
2차 심사	현장 적용성 (70점)	시공성(20), 구조안전성(15), 유지관리 관리성(15) 안전성(20)	현장 적용성 (70점)	최종 안전성(10) 환경성(10)	
	보급성 (30점)	시장성(15), 공역성(15)	보급성 (30점)	최종	
연장 심사	활용실적 (30점)	활용건수 및 금액(30)	활용실적 (30점)	최종	
	기술의 우수성 (70점)	기술수준(15), 품질검증(15), 경제성(15), 시장성(5), 안전성(10), 기술개발(5), 권고사항 이행여부(5)	기술의 우수성 (70점)	최종	
	가점 (10점)	사후평가 결과(5)	가점 (10점)	최종	
		해외 활용실적(3) 기술보급 노력(2)		해외 활용실적(2) 기술보급 노력(1) 기술가치평가(2)	

스마트 건설기술(첨단기술성 충족)

- 건설에 첨단기술(BIM, 드론, IoT, 빅데이터, AI 등)을 융합한 기술

설계부문 핵심기술	① 드론기반 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기술 ② BIM 적용 표준 ③ BIM 설계 자동화 기술
시공부문 핵심기술	① 건설기계 자동화 기술 ② 건설기계 통합운영 및 관제 기술 ③ 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기술 ④ ICT 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술 ⑤ BIM 기반 공정 및 품질 관리
유지관리 핵심기술	① 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② 드론·로봇릭스 기반 시설물 상태 진단 기술 ③ 시설물 정보 빅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기술 ④ AI 기반 유지관리 최적 의사결정 기술

[발행연점 : 2018.10.31. 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22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안내



신기술 사후평가



● 목적

- 발주청이 신기술을 활용한 후 기술의 장단점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신기술정보마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신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제도

● 관련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 등
-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예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사후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신기술 인증 관리 시스템 * <https://ntech.kaia.re.kr>(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신기술 사후평가

1 신기술인증 관리 시스템 클릭

2 로그인 후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클릭

3 사후평가 작성 클릭

5 활용실적 검색

신기술 사후평가

3 사후평가 작성 클릭

5 활용실적 검색

4 신기술 개요 확인

5 활용실적 추가하기

신기술 사후평가

6 사후평가 작성

※ 활동영역 : ☐ 건설 ☐ 교통 ☐ 항공우주

활동영역 : 분야 :

평가 항목	평가 결과	평가	평가				
			기술성(20%)	경제성(20%)	사회성(20%)	환경성(20%)	문화성(20%)
기술성(20%)	기술성 평가	10	10	10	10	10	
경제성(20%)	경제성 평가	10	10	10	10	10	
사회성(20%)	사회성 평가	10	10	10	10	10	
환경성(20%)	환경성 평가	10	10	10	10	10	
문화성(20%)	문화성 평가	10	10	10	10	10	

7 사후평가 정보 홈페이지 공개

신기술 검색

신기술명 : 분야 :

기술성 : 경제성 : 사회성 : 환경성 : 문화성 :

번호	기술명	분야	기술성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문화성	사후평가
1	신기술	기술성	10	10	10	10	10	10
2	신기술	경제성	10	10	10	10	10	10
3	신기술	사회성	10	10	10	10	10	10

*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결 적용시 참고사법, 활용상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추가

2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기술인증제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 건설신기술 (031-389-6350, 391, 475, 481)
 - 교통신기술, 녹색인증 (031-389-6483, 485)
 - 교통카드 인증 (031-389-6482)
- ✓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화 지원R&D**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일자리사업화지원실
 - 기술가치평가 (031-389-6387, 371)
 - 기술사업화 지원 R&D (031-389-6539, 343)
-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협약자 제도**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02-516-2649)



감사합니다

